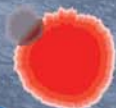


2010년도 스포츠산업 경영정보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10년 스포츠산업 경영정보조사

2009년 기준 조사

최종보고서

2010. 12

본 보고서를

「2010 스포츠산업 경영정보」

결과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0. 12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과학연구원
원장 서 상 훈

연구수행기관 및 연구진

연구수행기관

- 주관기관 :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과학연구원

참여연구진

-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과학연구원

- 책임연구자 : 정지명(정책개발연구실)
- 공동연구자 : 송명규(정책개발연구실)
- 보조연구자 : 이민우(연세대학교)
- 조사기관 : 통계청

목 차

I. 스포츠산업 경영정보사 총론	1
1. 2009년 기준조사 조사 방향	3
2. 2009년 기준조사 조사목적	3
3. 2009년 기준조사 특징	4
3.1 스포츠산업분류 적용 변화	5
3.2 산업별 조사표 구분 및 조사항목 다변화	9
3.3 부가가치 통계 산출	9
3.4 높은 신뢰성 확보를 위한 철저한 조사원 교육 및 설문조사 실시	10
4. 조사내용 및 방법	11
4.1 조사설계	11
4.2 조사대상	11
4.3 조사단위	12
4.4 조사절차	13
4.5 조사모집단	13
4.6 표본규모 및 배분	20
4.7 시장규모 추정	26
4.8 조사의 한계 및 유용성	28
II. 스포츠산업체 일반현황	29
1. 스포츠산업체 일반 현황	31
1.1 사업체 수	31
III. 스포츠산업 실태조사 결과	39
1. 총괄	41
1.1 2009년 기준조사 스포츠산업 요약	41
1.2 연도별 스포츠산업 규모 추이	41
1.3 스포츠산업 부가가치	43
2. 매출액	45
2.1 사업종류별 매출액 현황	45
2.2 조직형태별 매출액 현황	46
2.3 종사자 규모별 매출액 현황	48

3. 종사자수	49
3.1 사업종류별 종사자수 현황	49
3.2 조직형태별 종사자수 현황	50
3.3 종사자 규모별 종사자수 현황	51
4. 사업실적	53
4.1 스포츠산업 전체 실적	53
4.2 사업종류별 내수·수출 실적	54
4.3 사업종류별 영업실적	55
5. 인력총원 및 사업체 경영전망	57
5.1 조직형태별 인력총원 현황	57
5.2 사업종류별 인력총원 현황	58
5.3 조직형태별 경기전망	58
5.4 사업종류별 경기전망	59
6. 특성항목	61
6.1 운동 경기 용품 내수 및 수입액 현황	61
6.2 경기 오락스포츠서비스업 연간 영업개월 및 이용인원	62
6.3 스포츠산업 교육서비스업 고객유형별 매출액 구성비	63
7. 스포츠산업 현안 실태조사 결과	65
7.1 전체 스포츠산업 현안 실태분석	65
7.2 사업종류별 현안 실태분석	68
8. 성과 및 제언	73
8.1 성과	73
8.2 제언	74
IV. 부 록	75

표 차례

I. 스포츠산업 경영정보조사 총론	1
〈표 I-1〉 2008년 기준조사에 적용된 스포츠산업 분류	5
〈표 I-2〉 2008년 기준 스포츠산업 경영정보조사 대상 및 범위	6
〈표 I-3〉 2009년 기준조사 스포츠산업분류	8
〈표 I-4〉 2009년 기준 스포츠산업 경영정보조사 설문내용 요약	9
〈표 I-5〉 조사대상	12
〈표 I-6〉 모집단 사업체 수 분포 및 종사자수 통계량	14
〈표 I-7〉 대분류별 모집단 비율	15
〈표 I-8〉 대분류별 종사자수 비율	15
〈표 I-9〉 기업체 조사자료를 이용하여 보충하거나 삭제한 업종별 최종 표본수	17
〈표 I-10〉 15개 세분류 업종을 고려한 표본규모	20
〈표 I-11〉 대분류별 표본수 비율	21
〈표 I-12〉 최종 업종별 표본수	22
〈표 I-13〉 조직형태별 사업체 수	23
〈표 I-14〉 종사자 수별 사업체 수	24
〈표 I-15〉 사업종류별 사업체 수	25
〈표 I-16〉 매출액 표준오차 및 변동계수	27
II. 스포츠산업체 일반현황	29
〈표 II-1〉 표본설계 내역과 보정결과 비교	31
〈표 II-2〉 15개 공표단위(중분류) 별 사업체수 현황	32
〈표 II-3〉 설립년도 비율	32
〈표 II-4〉 조직형태별 사업체 수	33
〈표 II-5〉 조직형태별 사업체 수	34
〈표 II-6〉 종사자수별 사업체 수	35
〈표 II-7〉 종사자수별 사업체 수	35
〈표 II-8〉 사업종류별 사업체 수	36
III. 스포츠산업 실태조사 결과	39
〈표 III-1〉 2009년 기준 스포츠산업 전체 요약	41
〈표 III-2〉 연도별 스포츠산업 규모 추정	42
〈표 III-3〉 GDP대비 스포츠산업규모 비율	43
〈표 III-4〉 스포츠산업 부가가치 유발계수 추이	44
〈표 III-5〉 스포츠산업 산업분류별 매출액	45

〈표 III-6〉 사업종류별 매출액	46
〈표 III-7〉 조직형태별 매출액	46
〈표 III-8〉 조직형태별 사업체수 & 매출액	47
〈표 III-9〉 종사자 수별 매출액	48
〈표 III-10〉 스포츠산업 산업분류별 종사자수	49
〈표 III-11〉 사업종류별 종사자수	50
〈표 III-12〉 조직형태별 종사자수	51
〈표 III-13〉 종사자수별 종사자	51
〈표 III-14〉 스포츠산업 전체실적	53
〈표 III-15〉 스포츠산업 사업실적	54
〈표 III-16〉 사업종류별 내수·수출실적	54
〈표 III-17〉 사업종류별 영업이익률	56
〈표 III-18〉 조직형태별 인력총원	57
〈표 III-19〉 사업종류별 인력총원	58
〈표 III-20〉 조직형태별 경기전망	59
〈표 III-21〉 사업종류별 경기전망	60
〈표 III-22〉 운동 및 경기용품제조업 상품별 구성비	61
〈표 III-23〉 운동 및 경기용품유통업 상품별 구성비	62
〈표 III-24〉 경기 및 오락스포츠 서비스업 연간 영업개월수 및 이용인원	63
〈표 III-25〉 고객유형별 매출액 비중	64
〈표 III-26〉 대외경쟁력 강화부문	65
〈표 III-27〉 육성발전 장애요인	66
〈표 III-28〉 육성발전 지원부문	67
〈표 III-29〉 매출 증대방안	67
〈표 III-30〉 사업종류별 대외경쟁력 강화부문	68
〈표 III-31〉 사업종류별 육성발전 장애요인	69
〈표 III-32〉 사업종류별 육성발전 지원부문	71
〈표 III-33〉 사업종류별 매출증대 방안	72

그림 차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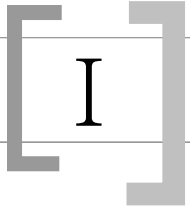
I. 조사개요	3
〈그림 I-1〉 대분류별 모집단 비율	15
〈그림 I-2〉 대분류별 종사자수 비율	15
〈그림 I-3〉 대분류별 모집단 및 표본 비율	21
〈그림 I-4〉 연도별 전수 및 표본 조사 비율	21
〈그림 I-5〉 조직형태별 사업체 표본 비율	24
〈그림 I-6〉 종사자 수별 사업체 표본 비율	24
〈그림 I-7〉 사업종류별 사업체 표본 비율	25
II. 스포츠산업체 일반현황	29
〈그림 II-1〉 표본설계 내역과 보정결과 비교	31
〈그림 II-2〉 설립년도 비율	33
〈그림 II-3〉 조직형태별 사업체 비율	34
〈그림 II-4〉 종사자 수별 사업체 비율	36
〈그림 II-5〉 사업종류별 사업체 비율	37
III. 스포츠산업 실태조사 결과	39
〈그림 III-1〉 연도별 스포츠산업 규모 추이	42
〈그림 III-2〉 GDP대비 스포츠산업규모 비율	43
〈그림 III-3〉 사업종류별 매출액 비율	46
〈그림 III-4〉 조직형태별 매출액 비율	47
〈그림 III-5〉 조직형태별 사업체수 & 매출액 비교	47
〈그림 III-6〉 종사자수별 매출액 비율	48
〈그림 III-7〉 사업종류별 종사자수 비율	50
〈그림 III-8〉 조직형태별 종사자수 비율	51
〈그림 III-9〉 종사자수별 종사자수 비율	52
〈그림 III-10〉 스포츠산업 사업실적 비율	54
〈그림 III-11〉 사업종류별 내수/수출 실적 비율	55
〈그림 III-12〉 사업종류별 영업 이익률	56
〈그림 III-13〉 조직형태별 인력충원	57
〈그림 III-14〉 사업종류별 인력충원	58
〈그림 III-15〉 조직형태별 경기전망	59
〈그림 III-16〉 사업종류별 경기전망	60
〈그림 III-17〉 운동 및 경기용품제조업 상품별 구성비	61
〈그림 III-18〉 운동 및 경기용품유통업 상품별 구성비	62

〈그림 Ⅲ-19〉 경기 및 오락스포츠 서비스업 연간 영업개월수 및 이용인원	63
〈그림 Ⅲ-20〉 고객유형별 매출액 비중	64
〈그림 Ⅲ-21〉 스포츠산업 대외경쟁력 강화 부문	65
〈그림 Ⅲ-22〉 스포츠산업 육성발전 장애요인	66
〈그림 Ⅲ-23〉 스포츠산업 육성발전 지원부문	67
〈그림 Ⅲ-24〉 스포츠산업 매출증대방안	68
〈그림 Ⅲ-25〉 사업종류별 대외경쟁력 강화부문	69
〈그림 Ⅲ-26〉 사업종류별 육성발전 장애요인	70
〈그림 Ⅲ-27〉 사업종류별 육성발전 지원부문	71
〈그림 Ⅲ-28〉 사업종류별 매출증대 방안	72



이용자 도움말

1. 본 조사 자료는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31일까지를 기준으로 스포츠산업통계조사(정부승인통계 승인번호 제11321호) 결과를 종합 집계, 분석한 결과이며, 조사 주기는 1년임
2. 스포츠산업은 2007.4.6 개정(법률 8333호)된 「스포츠산업진흥법」에 명시된 ‘스포츠와 관련된 재화와 서비스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이라고 정의되지만 그 범위와 내용이 매우 다양하며 명확하지 않음. 따라서 본 「2010 스포츠산업 경영정보조사」는 스포츠산업을 「한국표준산업분류」에 특수분류로 분류된 스포츠산업을 범위로 조사대상을 한정함
3. 조사결과는 실태조사(표본조사) 결과 및 타조사 자료인용으로 이루어짐
4. 조사수행기관은 통계청 통계대행과가 자료수집, 산출 등 총괄적인 조사를 진행함
5. 실태조사 결과 중 업체수, 매출액, 종사자수, 영업비용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추정된 수치임을 이용에 참고하기 바람
6. 조사항목별 집계과정에서 수치는 반올림한 값으로 이로 인하여 하위분류의 합계가 상위분류의 합계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7. 전년도 조사결과와 시계열비교가 불가능한 것은 분류체계와 작성방법의 변경에 따른 것임
8. 해당 자료가 없거나 미상일 경우는 [-]을 표시함
9. 본 보고서의 내용을 인용할 때에는 “ 「2010 스포츠산업경영정보(문화체육관광부)」 o페이지에서 전재 또는 역재” 라고 기재하여야 함
10. 본 보고서에 실린 자료에 대한 문의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02-3704-9853),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과학연구원 정책개발연구실(02-970-9573)에 문의바람. 조사 결과 및 분석내용은 스포비즈(www.spobiz.kr)에서도 볼수 있음



스포츠산업 경영정보조사 총론



I. 조사개요

1. 2009년 기준조사 조사 방향

- 스포츠산업 경영정보조사는 2009년 기준조사까지 3회가 진행된 사업이며, 국가승인 통계로서는 2009년 기준조사가 최초로 실시된 사업임
 - 2008년 기준조사까지의 스포츠산업 통계는 정부승인통계로 지정되어 공식적으로 조사·산출되는 것이 아니라 주무부서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정책의사결정의 실용성을 제고할 목적으로 산출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스포츠산업 전체의 정확한 모집단을 기초로 산출되는 체계적이고 신뢰성 있는 자료의 제공을 위하여 국가승인통계 지정을 통한 사업 진행
- 2009년 기준조사는 통계작성방법, 스포츠산업분류체계(한국표준산업분류 중 특수분류 적용), 결과분석 등을 표준화함으로써 연도별, 부문별 비교분석이 가능하도록 시계열 자료 구축의 틀을 구성하고 스포츠산업의 대표 통계가 될 수 있도록 진행함
- 스포츠산업 진흥 및 육성을 위한 공식적인 지표 활용을 위해 국가승인지정통계를 확보하고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실사를 통하여 신뢰성 있는 실태조사를 진행함
 - 2008년 기준조사의 52,800개의 모집단수보다 약 30,000개가 늘어난 80,000여개의 모집단을 확보하였으며 1차 자료이외에도 통계청이 확보하고 있는 2차 자료를 활용한 통계 산출
 - 모집단 보정을 통하여 스포츠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체수를 추정함
- 통계청과 DB 연계를 통한 스포츠산업정보데이터의 가치 및 활용성 증대

2. 2009년 기준조사 조사목적

-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특수분류(스포츠산업)의 적용을 통한 국가승인통계 지정
 - 기존 스포츠산업 경영정보조사는 주무부서인 문화체육관광부의 내부 정책의사결정에 목적을 두고 진행한 사업 이였지만, 2009년 기준조사는 국민에게 스포츠산업의 사회적, 경제적 가치 등을 알리기 위한 공표의 목적을 두고 진행함

- 최신 모집단 확보 목적
 - 모집단 파악은 통계조사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써 2009년 기준조사에서는 2009년 기준 전국사업체조사의 결과 중 스포츠산업분류에 해당하는 사업체 리스트를 표본추출틀로 활용하여 최신 모집단 확보에 주력
 - 1차 조사를 통한 스포츠산업체의 규모파악 및 실태조사 뿐만 아니라 각종 사업체 자료 및 지자체 자료를 활용하여 새로운 모집단 확보 노력

- 스포츠산업 정책 활용 목적뿐만 아니라 스포츠산업 진흥 및 육성의 공식적인 지표 활용의 극대화 추구
 - 스포츠산업 경영정보조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실사를 통한 공표
 - 스포츠산업의 특성상 영세업체가 많아 이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통계청과의 긴밀한 협조, 자료수집원 교육, 각 지자체의 사업체 DB 등을 이용한 체계 구축

- 총량개념의 통계를 통한 스포츠산업 전반의 실태 및 동향을 파악
 - 스포츠산업시장의 전체규모 뿐만 아니라 종사자 규모, 인력채용 현황, 영업손익 등 총량개념의 통합적인 자료 산출을 목적으로 진행하였음
 - 스포츠산업시장의 사업체 경기전망, 인력채용 현황 등의 내용뿐만 아니라 스포츠서비스업의 경우 연간이용객 현황 등의 실태를 파악하고자 하였음

3. 2009년 기준조사 특징

3.1 스포츠산업분류 적용 변화

2009년 기준조사에서는 2008년 기준조사와 달리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스포츠산업 특수분류를 적용하여 스포츠산업 경영정보조사를 진행함

- 2008년 기준조사까지는 스포츠산업을 스포츠용품업, 스포츠서비스업, 스포츠시설업 등 3개산업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음
 - 스포츠용품업은 스포츠용품 제조업과 스포츠유통업으로 구분
 - 스포츠시설업은 종목별 시설운영업과 리조트형 시설업, 그리고 시설건설업으로 구분
 - 스포츠서비스업은 스포츠경기업, 스포츠마케팅업, 스포츠정보업 등으로 구분

<표 1-1> 2008년 기준조사에 적용된 스포츠산업 분류

구 분	의 미	세 분 류
스포츠 용품제조업	엘리트선수, 아마추어 및 생활체육동호인 시장을 표적으로 스포츠 활동에 필요한 장비, 의류, 신발 등을 생산·판매하는 업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포츠용품 제조업, 운동용구제조업, 스포츠어패럴제조업 ■ 스포츠용품유통업, 스포츠용품도소매업, 스포츠용품대여업, 스포츠용품수입업
스포츠 시설업	생활스포츠에서부터 올림픽 또는 월드컵과 같은 국제대회를 치를 수 있는 경기장의 건설 및 운영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포츠시설건설업, 스포츠시설설치업, 경기장시설건설업 ■ 스포츠시설운영업, 종목별 스포츠시설운영업, 리조트형 스포츠시설업, 스포츠시설 임대업
스포츠 서비스업	관람스포츠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업종으로서 스포츠마케팅대행, 이벤트 기획 및 관리, 선수사업 등이 포함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포츠경기업, 프로스포츠업, 아마추어스포츠업, 경륜, 경정, 경마, 스포츠이벤트업 ■ 스포츠마케팅업, 스포츠마케팅대행업, 스포츠에이전트업, 선수양성업 ■ 스포츠정보업, 스포츠신문·출판업, 스포츠방송업, 스포츠인터넷사업, 스포츠복권·복표업, 회원권판매업, 스포츠소프트웨어개발업

자료 : 김종 외(2000), 스포츠산업 육성 기본계획, 문화체육관광부

<표 1-2> 2008년 기준 스포츠산업 경영정보조사 대상 및 범위

대분류		소분류	조사방법	
			실태조사 및 추정	타 조사자료 활용 및 추정
용품업	스포츠용품제조업	운동용품	○	△
		스포츠의류 및 신발	○	△
		스포츠음료제조업	○	△
	스포츠유통업	스포츠도소매업(전자상거래포함)	○	△
시설업	시설건설업	민간시설	○	△
		공공시설	○	△
	시설운영업	시설이용 및 강습료	○	△
		골프장 이용료	○	△
서비스업	스포츠경기업	경륜	국민체육진흥공단	○
		경정	국민체육진흥공단	○
		경마	마사회	○
		아마추이스포츠	○	△
		프로스포츠	○	△
		스포츠이벤트	○	△
	스포츠마케팅업	스포츠마케팅대행업	○	△
		스포츠에이전트업	○	△
		선수양성업	○	△
	스포츠정보업	스포츠신문·출판업	○	△
		스포츠방송업	○	△
		스포츠복권 및 복표업	○	△
		회원권대행판매업	○	△
		스포츠게임(인터넷게임)	○	△
온라인, 음성스포츠정보서비스		○	△	

※ 2차자료는 통계청의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산업체총조사보고서, 광업제조업통계조사, 도시가계연보, 건설업통계조사보고서, 관세청수출입통계, 각 협회자료 등이 포함

□ 2009년 기준조사 스포츠산업 분류 변화 적용

- 국가승인통계 지정 목적에 부합하기 위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산업특수분류」 중 스포츠산업분류를 적용하여 스포츠산업경영정보조사를 진행함
- 2009년 기준조사는 4개의 대분류, 15개의 중분류, 44개의 하위분류인 「산업특수분류」를 근거로 실시하되 스포츠산업 현실을 반영하기 위하여 소분류에 항목을 추가하였음
- 각 업종별 하위업종에 대한 개념의 정의가 「2008년 한국표준산업분류」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개념정리를 실시한 후 실태조사를 진행함

- 스포츠미디어 분야는 특수분류에 포함되진 않았지만 스포츠산업 진흥 기반에 필요한 분야이며 2차자료를 활용한 정확한 통계산출이 가능하기에 스포츠방송업, 스포츠신문업 등을 포함시킴

- 운동 및 경기용품 제조업(중분류4, 소분류16)
- 경기 및 오락스포츠업(중분류7, 소분류21)
- 운동 및 경기용품 유통 및 임대업(중분류3, 소분류5)
- 스포츠 및 레크레이션 교육기관(중분류1, 소분류2)

<표 1-3> 2009년 기준조사 스포츠산업분류

대분류	중분류	중분류명	세분류	KSIC	산업분류명	품목명	
1. 운동 및 경기용품 제조업	1-1	기타 비알루미늄류 제조업	1-1-1	11209	기타 비알루미늄류 제조업	스포츠음료(알카리성 이온음료)	
			1-2	섬유제품 및 의복 제조업	1-2-1	13224	천막 및 기타 캔버스 제품 제조업
	1-2-2	13229			기타 직물제품 제조업	구명자켓, 구명벨트	
	1-2-3	14191			셔츠 및 체육복 제조업	스포츠의류 제조	
	1-2-4	14199			그 외 기타 봉제의복 제조업	스포츠의류 부분품	
	1-3	가방 및 신발 제조업	1-3-1	15129	가방 및 기타 보호용 케이스 제조업	등산용 배낭	
			1-3-2	15219	기타 신발 제조업	경기용 및 특수용 신발 제조	
			1-3-3	15220	신발부분품 제조업	경기용 운동화 부분품	
	1-4	운동 및 경기용구 제조업	1-4-1	25200	무기 및 총포탄 제조업	수렵용 공기총, 경기용 총포탄	
			1-4-2	31120	오락 및 스포츠용 보트 건조업	범선, 요트, 카누, 카약	
			1-4-3	31991	자전거 및 환자용 차량 제조업	스포츠용 자전거, 자전거 부품	
			1-4-4	33301	제조, 육상 및 체력단련용 장비 제조업		
			1-4-5	33302	놀이터용 장비 제조업		
			1-4-6	33303	낚시 및 수렵용구 제조업		
			1-4-7	33309	기타 운동 및 경기용구 제조업		
			1-4-8	33409	기타 오락용품 제조업	볼링용구, 당구용구	
			1-4-9	33999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제품 제조업	회전목마, 기타 흥행장용품	
	2. 경기 및 오락 스포츠업	2-1	경기장 운영업	2-1-1	91111	실내경기장 운영업	
				2-1-2	91112	실외경기장 운영업	
2-1-3				91113	경주장 운영업		
2-2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2-2-1	91191	스포츠 클럽 운영업		
			2-2-2	91199	그 외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스포츠미디어(방송,신문)	
2-3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2-3-1	91121	골프장 운영업		
			2-3-2	91122	스키장 운영업		
2-4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2-4-1	91131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		
			2-4-2	91132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2-4-3	91133	수영장 운영업		
			2-4-4	91134	볼링장 운영업		
			2-4-5	91135	당구장 운영업		
			2-4-6	91136	골프연습장 운영업		
			2-4-7	91139	그 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2-4-8	91291	무도장 운영업	무도장	
2-4-9		91292	체육공원 및 유사 공원 운영업	체육공원 운영			
2-5		수상스포츠시설 운영업	2-5-1	91231	낚시장 운영업		
			2-5-2	91239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	수상스포츠 시설 운영	
2-6		캠핑 및 베팅업	2-6-1	91241	복권발행 및 판매업	스포츠토토	
			2-6-2	91249	기타 캠핑 및 베팅업	경마, 경륜, 경정 관련 베팅시설	
2-9	기타 경기 및 오락스포츠업	2-9-1	73901	매니저업	스포츠인 매니저		
		2-9-2		그 외 기타 경기 및 오락스포츠업			
3. 운동 및 경기용품 유통·임대업	3-1	운동 및 경기용품 도매업	3-1-1	46464	운동 및 경기용품 도매업		
			3-1-2	46465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도매업	스포츠용 자전거 및 부품 도매	
	3-2	운동, 경기용품 및 자전거 소매업	3-2-1	47631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3-2-2	47632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스포츠용 자전거 소매	
	3-3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용품 임대업	3-3-1	69210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용품 임대업		
	4.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4-1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4-1-1	85611	스포츠 교육기관	
4-1-2				85612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댄스교습	

*스포츠미디어(방송,신문)는 특수분류에 미포함부분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판단에 따라 포함시킴

3.2 산업별 조사표 구분 및 조사항목 다변화

- 2009년 기준조사의 조사표는 산업별로 특성을 고려하여 조사표 내용을 구분하였으며, 단순한 총량추정 목적에서 벗어나 스포츠산업체의 다양한 요구사항 수용을 위해 조사항목의 다변화를 실시함
- 2008년 기준조사의 경우 일반현황(8개), 기업현황(4개), 매출/수입현황(5개), 향후기업 전망으로 산업별 분류 없이 총량추정의 목적으로 단조로운 조사가 이루어졌음
- 2009년 기준조사는 사업체의 조직형태부터 종사자관련 5개 문항, 사업실적별 9개 문항, 산업특성별 3개 문항, 스포츠산업관련 4개 문항, 마지막으로 경기전망을 묻는 다변화된 형태로 전환
- 그러므로, 스포츠산업 규모의 총량추정 뿐만 아니라 스포츠산업의 종사자 규모, 스포츠산업체의 애로사항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실질적인 실사가 진행됨

<표 I-4> 2009년 기준 스포츠산업 경영정보조사 설문내용 요약

조사 항목	세부 항목
사업체 일반사항	■ 사업체명 ■ 대표자명 ■ 창설연월 ■ 소재지 ■ 사업자등록번호
조직형태	
종사자수	■ 종사자수, 인력충원 현황, 연간 급여액
사업의 종류	
사업 실적	■ 사업 실적, 스포츠산업 비중
특성항목(업종별)	■ 상품별 구성비, 이용인원, 고객유형별 매출액 구성비
사업체 경영전망	■ 전년대비 매출액 증가율
설문문항	■ 스포츠산업 대외 경쟁력 필요 부문 ■ 스포츠산업 육성발전의 장애 요인과 정부 지원 등

3.3 부가가치 통계 산출

- 2009년 기준조사에서는 사업종류별(대분류) 부가가치를 산출하여 스포츠산업으로 인해 창출되는 가치를 확인함
- 단, 스포츠산업의 부가가치는 직접 산출하지 않으며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에 근거해서 부가가치 유발계수를 산출함

3.4 높은 신뢰성 확보를 위한 철저한 조사원 교육 및 설문조사 실시

- 2009년 기준 스포츠산업 경영정보조사는 높은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사원 56명(남자 6명, 여자 50명)을 채용하여 조사원 교육부터 현장조사까지 철저한 준비과정과 정확한 본조사를 실시함
- 조사원 채용은 조사대상 사업체가 20개 이상인 청 및 사무소가 해당되며, 20개미만은 사무소의 의견을 반영 해당 직원 및 조사원이 조사
- 업무량은 1일 3.5개 사업체¹⁾로 할당하여 준비조사기간을 거쳐 본 조사(10일 이내)를 진행하였음
- 2009년 기준 스포츠산업실태조사에 참여한 조사원(56명)을 대상으로 조사 전반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하여 문제점 및 개선안을 도출, 효과적인 조사체계를 구축함

1) 경제통계통합조사 평균 업무량(「2009년 기준 경제통계통합조사 세부시행계획」 2010. 3.)참조

4. 조사내용 및 방법

4.1 조사설계

조사 지역	▶	■ 전국(제주특별자치도 포함)
조사 범위	▶	■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제조업, 유통업, 관련 서비스업
표본 (Sample) 크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1,999개 업체 - 운동 및 경기용품 제조업 : 595개 - 경기 및 오락스포츠업 : 869개 - 운동 및 경기용품 유통·임대업 : 360개 -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 175개
조사 내용	▶	■ 사업체 일반현황, 종사자수, 사업의 종류, 사업실적, 스포츠산업 비중, 특성항목, 사업체 경영전망, 설문문항 등(16개 항목)
조사 방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시조사원을 채용하여 표본사업체를 직접 방문, 조사표 작성 방법을 설명하고 사업체 응답자가 직접 작성(자계식)하거나 조사원이 항목별로 질문하여 기입하는 방식(타계식)을 병행 ■ 응답자의 회신 편의성을 고려한 전화, 이메일, Fax 조사 병행
조사 기간	▶	■ 2010. 11. 22. ~ 12. 3.(10일간)

4.2 조사대상

- 본 조사는 조사기준일(2010년 11월 19일) 현재 국내에 소재하며 스포츠산업을 영위하는 종사자 1인 이상의 사업체를 조사대상으로 함
- 본 조사에 포함되는 스포츠산업은 운동 및 경기용품 제조업, 경기 및 오락스포츠업, 운동 및 경기용품 유통·임대업,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 등 4개 산업을 대분류로 한정하여 조사를 진행함
- 운동 및 경기용품 제조업은 기타 비알콜음료 제조업, 섬유제품 및 의복 제조업, 가방 및 신발제조업, 운동 및 경기용구 제조업으로 구분

- 경기 및 오락스포츠업은 경기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캠블링 및 베틱업, 기타 경기 및 오락스포츠업으로 구분
- 운동 및 경기용품 유통임대업은 운동 및 경기용품 도매업, 운동, 경기용품 및 자전거 소매업,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용품 임대업으로 구분
-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포함

<표 1-5> 조사대상

대분류	중분류명
1. 운동 및 경기용품 제조업	■ 기타 비알콜음료 제조업 (스포츠음료)
	■ 섬유제품 및 의복 제조업 (캠핑용 직물제품 구멍자켓, 구멍벨트스포츠의류 제조 스포츠의류 부분품 등)
	■ 가방 및 신발 제조업 (등산용 배낭 경기용 및 특수용 신발 제조 경기용 운동화 부분품 등)
	■ 운동 및 경기용구 제조업 (수렵용 공기총, 경기용 총포탄 범선, 요트, 카누, 카약 스포츠용 자전거, 자전거 부품 볼링용구, 당구용구 회전목마, 기타 흥행장용품 등)
2. 경기 및 오락스포츠업	■ 경기장 운영업
	■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 수상스포츠시설 운영업
	■ 캠블링 및 베틱업
	■ 기타 경기 및 오락스포츠업
3. 운동 및 경기용품 유통·임대업	■ 운동 및 경기용품 도매업
	■ 운동, 경기용품 및 자전거 소매업
	■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용품 임대업
4.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4.3 조사단위

- 사업체 단위: 단독사업체, 지사(지점) 등
- 개별 사업체 「(본사(지사 제외), 지사(점), 영업소 등) 별 조사표 작성
- 본사와 지사가 표본으로 동시에 대상사업체로 선정된 경우 본사를 대상으로 기업체 단위 조사

4.4 조사절차

구분	주요 업무 내용	관련기관 및 부서
준비 단계	조사항목 설정 및 조사표 설계	체육과학연구원, 통계대행과
	↓	
	표본설계	체육과학연구원, 통계대행과, 표본과
	↓	
	실시계획 수립 및 예산 재배정	통계대행과
	↓	
	입력·내검·집계 프로그램 개발(엑셀)	통계대행과
	↓	
	조사지침서 작성 및 조사표류 인쇄	통계대행과
	↓	
	조사원 채용	지방청(사무소)
현장 조사	↓	
	담당자 교육 및 조사원 교육	체육과학연구원, 통계대행과 지방청(사무소)
	↓	
	준비조사	지방청(사무소)
	↓	
	본조사 실시	지방청(사무소)
↓		
	조사표 내검 및 입력	지방청(사무소)
↓		
	조사표 제출	지방청(사무소)
자료처리 및 집계·제출	↓	
	조사결과 검토 및 집계	통계대행과
	↓	
	최종보고서 작성	체육과학연구원

4.5 조사모집단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산업특수분류」 중 스포츠산업분류에 해당하는 사업체로서 포괄범위는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제조업, 유통업, 관련 서비스업(대상 업종은 [별표1] 참고)으로 한정

□ 종사자 규모별 모집단 수

- 스포츠산업의 매출현황, 향후경영전망 등을 추정하기 위한 조사로서 표본설계를 위해

활용 가능한 특성변수는 종사자수임을 감안함

- 전체 스포츠산업 종사자수의 왜도가 99.8, 세분류 왜도가 1.8~43.8으로 상당히 치우친 분포를 나타냄
-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은 종사자수의 제1사분위수가 1~3명, 중위수가 1~7.5명, 제3사분위수가 2~29명으로 소규모 사업체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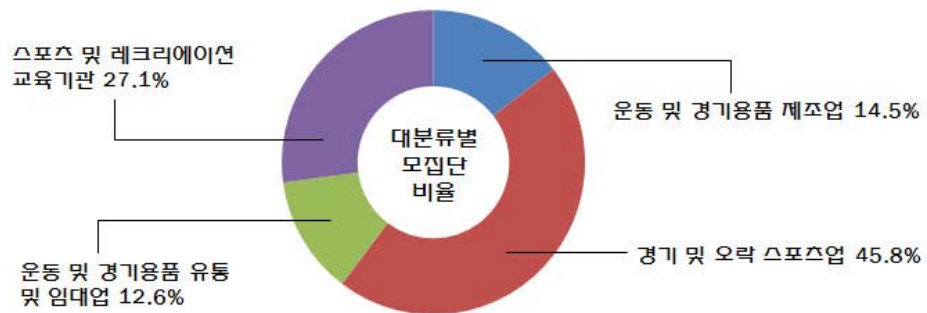
<표 1-6> 모집단 사업체 수 분포 및 종사자수 통계량 (2009년 기준, 잠정)

	사업체 수	종사자수								
		총합	평균	표준 편차	최소값	제1 사분위 수	중위수	제3 사분위 수	최대값	왜도
전체	82,859	305,046	3.7	20.8	1	1	2	3	3,976	99.8
운동 및 경기용품제조업	12,047	90,928	7.5	27.1	1	2	4	7	1,563	31.5
비알콜음료	187	4,717	25.2	47.3	1	2	6	26	335	3.4
섬유제품 의복	8,422	55,897	6.6	17.0	1	2	4	7	594	19.9
가방 및 신발	2,133	13,884	6.5	11.4	1	2	4	7	306	11.9
운동 및 경기용품	1,305	16,430	12.6	65.6	1	2	4	9	1,563	17.7
경기 및 오락스포츠업	37,920	148,478	3.9	26.3	1	1	2	2	3,976	96.4
경기장운영업	204	6,546	32.1	100.8	1	2	5	22	1,100	7.4
기타스포츠서비스	423	4,561	10.8	23.0	1	2	3	8	215	4.6
골프장, 스키장	326	30,073	92.2	82.6	1	30	76	136	610	1.8
스포츠시설운영	32,894	85,771	2.6	5.8	1	1	2	2	239	15.3
수상스포츠시설	1,238	3,975	3.2	4.2	1	1	2	3	51	4.8
갬블링 및 베팅업	2,670	16,138	6.0	81.6	1	1	2	2	3,976	43.8
기타	165	1,414	8.6	17.1	1	2	4	8	149	5.9
운동 및 경기용품 유통 및 임대업	10,425	25,310	2.4	6.0	1	1	2	2	384	34.0
도매업	1,126	7,066	6.3	17.1	1	2	3	5	384	13.0
소매업	8,456	16,188	1.9	1.7	1	1	2	2	61	11.0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용품 임대업	843	2,056	2.4	2.0	1	1	2	3	23	4.1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22,467	40,330	1.8	1.8	1	1	1	2	92	15.4

<표 1-7> 대분류별 모집단 비율

구 분	사업체수	비중
운동 및 경기용품제조업	12,047개	14.5%
경기 및 오락스포츠업	37,920개	45.8%
운동 및 경기용품 유통 및 임대업	10,425개	12.6%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22,467개	27.1%
합계	82,859개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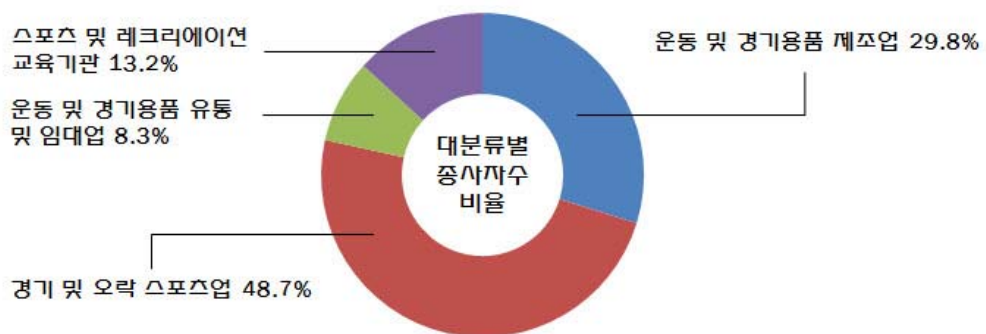
그림 .1-1 대분류별 모집단 비율



<표 1-8> 대분류별 종사자수 비율

구 분	종사자수	비중
운동 및 경기용품제조업	90,928개	29.8%
경기 및 오락스포츠업	148,478개	48.7%
운동 및 경기용품 유통 및 임대업	25,310개	8.3%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40,330개	13.2%
합계	305,046개	100.0%

그림 .1-2 대분류별 종사자수 비율



□ 모집단의 층화

- 2009년 기준 전국사업체조사의 결과 중 스포츠산업분류에 해당하는 사업체 리스트를 표본추출틀²⁾로 활용
- 2009년 기준조사는 총 82,859개 사업체가 표본추출틀에 활용됨
- 15개 세분류 업종을 공표단위로 고려하여 표본규모 결정
- 모집단의 층화
 - 모집단이 치우친 분포인 경우 적용할 수 있는 응용절사법³⁾과 L-H층화방법⁴⁾ 중 L-H층화법 선택
 - L-H층화 후 부차모집단별로 2~5개의 층으로 나누어진 표본층은 네이만 배분법을 적용해서 표본규모 계산 및 배분
 - 층화 결과 첫 번째 층 경계점이 종사자수 1인일 경우 해당 층은 분산이 0으로 표본 배분시 문제가 되므로 층 경계점을 2인으로 바꾸어줌

□ 조사모집단 보정

- 조사모집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산업특수분류」 중 스포츠산업분류에 해당하는 모든 사업체이고, 표본추출틀은 2009년 기준 전국사업체조사 결과 중 스포츠산업분류에 해당하는 사업체 리스트임
- 설계에 사용한 표본추출틀에 스포츠산업분류에 해당하는 사업체와 스포츠산업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체가 혼용되어 있음
 - 설계 당시 2009년 기준 전국사업체조사 결과에서 스포츠산업분류를 영위하는 사업체들로만 표본추출틀을 구성할 수 없었기 때문에 운동 및 경기용품 제조업을 중심으로 표본추출틀의 과대포함(스포츠산업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체 포함)이 발생
 - 이에 따라 표본으로 추출된 사업체가 스포츠산업을 영위하지 않는 업체인 경우 대체⁵⁾를 반복함으로써 결과에 편향이 발생하여 신뢰할 수 없게 됨에 편향을 최소화 시키는 추정 방안 강구
- 기업체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할 수 있도록 표본추출틀을 보충하거나 스포츠산업에

2) 표본추출틀이 2009년 기준 전국사업체조사 잠정결과이므로 추후 확정결과로 가중치조정 여부를 판단하여 추정해야함

3) 주어진 신뢰도와 허용오차를 만족하는 표본수를 가장 작게 하는 절사점을 택한 후 특성변수의 값이 절사점보다 큰 업종은 전수조사를 하고(전수층) 절사점보다 작은 업종은 표본추출을 하여 조사하는 방법 (표본층)

4) 모집단을 표본층과 전수층으로 나누는 것은 응용절사법과 비슷하지만 주어진 층 수 및 허용오차 하에서 최적의 층경계점을 계산하고 마지막 층은 전수층으로 나머지 층들은 표본층으로 설계하는 방법

5) 전수층 95개, 표본층 230개 사업체가 스포츠산업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체로 조사됨

해당하지 않음이 확실한 사업체는 삭제

- 비알콜음료제조업(11209), 스키장운영업(91122), 복권발행 및 판매업(91241)은 기업체조사 자료를 이용한 전수조사로 변경
- 경주장운영업(91113)은 한국마사회, 국민체육진흥공단 경정장, 경륜장 본장을 기업체조사 자료를 이용한 전수조사로 변경하고 해당 기업체의 지점은 표본추출틀에서 모두 제외
- 골프장운영업(91121)은 기업체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전수층 15개 업체 보충
- 기타 잼블링 및 베탱업(91249)은 한국마사회, 국민체육진흥공단 경정장, 경륜장 지사점 49개 모두를 전수층에 추가하고 해당 기업체의 지점이 표본층에서 추출된 경우 제외

<표 1-9> 기업체 조사자료를 이용하여 보충하거나 삭제한 업종별 최종 표본수

산업분류	최초			보정		
	모집단수	전수층	표본층*	모집단수	전수층	표본층**
비알콜음료제조업(11209)	187	32	29	3	3	
스키장운영업(91122)	5	1	1	17	17	
복권발행 및 판매업(91241)	2599	1	68	1	1	
경주장운영업(91113)	29	15	8	16	8	3
골프장운영업(91121)	321	43	44	336	58	39
기타 잼블링 및 베탱업(91249)	71	21	27	84	59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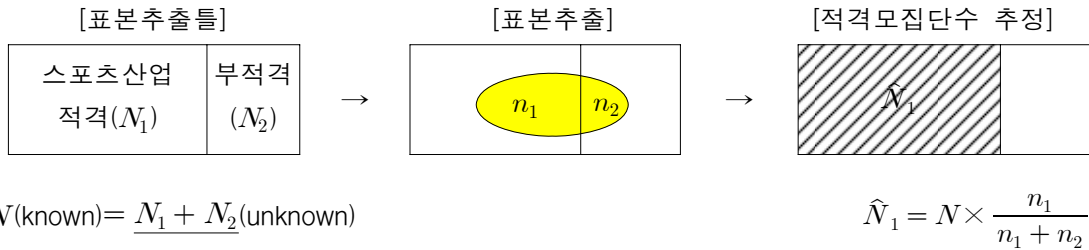
*표본설계 당시 표본층의 표본규모, **조사완료된 숫자

□ 포획-재포획(Capture-recapture) 추정기법을 응용한 적격 모집단수를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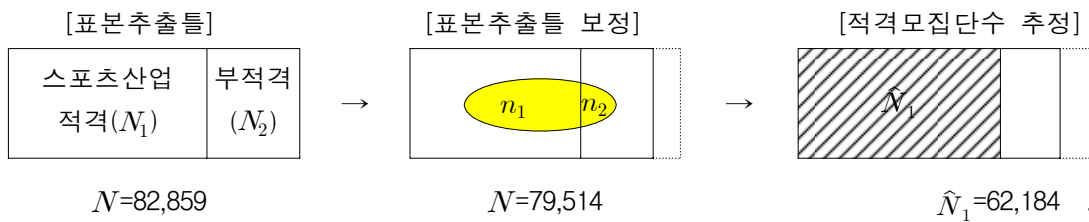
[포획-재포획 방법 적용을 위한 가정 및 모집단 추정방법]

- 폐쇄 모집단(Closed population)이라고 가정. 즉, 사업체 생멸은 서로 상쇄되어 모집단의 크기의 변화가 없다고 가정함
- 표본추출은 층화 임의추출이므로 모든 사업체들은 추출된 확률이 층별 동일
- 단 사업체의 스포츠산업 해당여부는 이미 정해져 있는 사실이므로 포획하고 재포획하는 두 번의 조사단계가 필요 없음
- 조사된 사업체 중 적격사업체의 비율을 설계당시의 표본추출틀의 모집단수에 곱하여 적격인 모집단수를 추정

- 표본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업종별 층별 스포츠산업 모집단수를 새로 추정 후 추정된 모집단수를 이용하여 가중치를 계산하여 조사항목 추정



- 모집단 적격사업체수 추정 결과



- 표본설계 당시 82,859개 사업체였으나 기업체조사 자료를 이용한 보정 결과 79,514개 사업체가 남았고 표본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적격 모집단수를 추정한 결과 부적격 정의 별로 62,184개 사업체가 최종 적격 모집단수로 추정됨

□ 스포츠산업 모집단 사업체수 추정 및 가중치 계산

- 업종별 층별 스포츠산업 모집단 사업체수를 다음과 같이 추정(\hat{N}_{gh})

N_{hi} : 설계 당시 표본추출틀의 h 업종 i 층 전체 사업체 수(전수층은 제외)

n_{hi} : 설계 당시 h 업종 i 층 표본 사업체 수

m_{hi} : h 업종 i 층 조사 완료된 표본 사업체 수

I_{Ahi} : h 업종 i 층 표본사업체 중 부적격 유고사유인 사업체 수

I_{Bhi} : h 업종 i 층 표본사업체 중 I_{Ahi} 를 제외한 나머지 유고사유가 있는 사업체 수

\hat{I}_{hi} : h 업종 i 층의 부적격 사업체 수

\hat{N}_{hi} : h 업종 i 층의 스포츠산업을 영위하는 전체 사업체 수

$$\hat{I}_{hi} = I_{Ahi} + I_{Bhi} \times \left(\frac{I_{Ahi}}{n_{hi} - I_{Bhi}} \right) = I_{Ahi} \times \left(\frac{n_{hi}}{n_{hi} - I_{Bhi}} \right)$$

$$\hat{N}_{hi} = N_{hi} \times \left(\frac{n_{hi} - \hat{I}_{hi}}{n_{hi}} \right) = N_{hi} \times \left(\frac{n_{hi} - I_{Ahi} - I_{Bhi}}{n_{hi} - I_{Bhi}} \right)$$

- 추정된 모집단을 이용하여 가중치 계산 및 추정
 - 가중치

$$w_{hi} = \frac{\hat{N}_{hi}}{n_{hi}} \times \frac{n_{hi}}{m_{hi}} = \frac{\hat{N}_{hi}}{m_{hi}}$$

4.6 표본규모 및 배분

15개 세분류 업종으로 부차모집단을 고려하여 실시함

□ 표본 규모

- 부차모집단별 분포에 따라 L-H층화를 위한 목표CV는 4~7%, 네이만배분의 상대허용오차는 4~8%로 설정함
- 표본규모는 1,999개이며, 15개 세분류 업종별 종사자수의 목표CV는 1.3~3.2%이고, 4개 중분류 업종별 목표CV는 1.1~2.5%, 전체의 목표CV는 0.8%로 설정함
- 전국 및 15개 세분류 업종의 부차모집단에 대하여 공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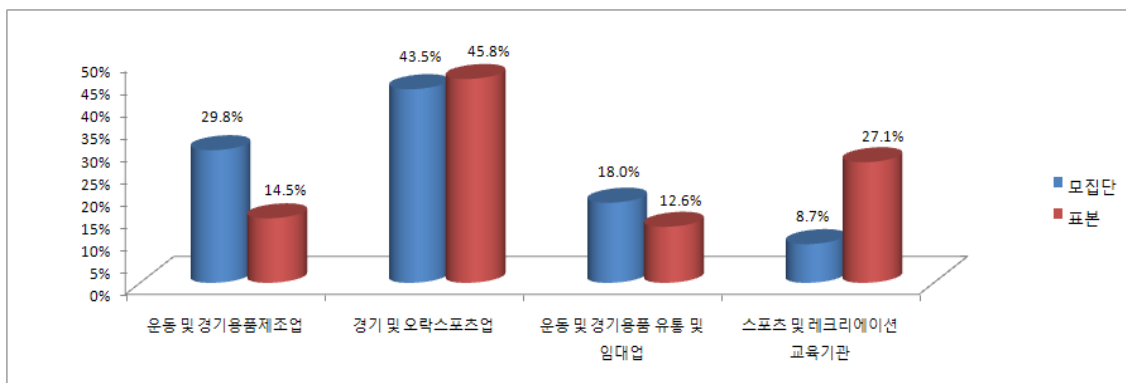
<표 1-10> 15개 세분류 업종을 고려한 표본규모

부차모집단	층수 (전수층 포함)	절사점 (전수층 경계)	모집단 사업체수	표본수		종사자수 목표CV	
				전수층	표본층		
전 체	-		82,859	1,999	557	1442	0.8%
운동 및 경기용품제조업	-		12,047	595	180	415	1.1%
비알콜음료	5	46	187	61	32	29	1.3%
섬유제품 의복	6	90	8,422	218	38	180	1.7%
가방 및 신발	5	28	2,133	174	65	109	1.7%
운동 및 경기용구	5	49	1,305	142	45	97	1.4%
경기 및 오락스포츠업	-		37,920	869	256	613	1.3%
경기장운영업	5	59	204	64	21	43	1.3%
기타스포츠서비스	4	25	423	107	40	67	1.5%
골프장, 스키장	6	179	326	89	44	45	1.8%
스포츠시설운영	5	65	32,894	280	55	225	2.1%
수상스포츠시설	4	14	1,238	139	38	101	2.2%
갠블링 및 베팅업	5	144	2,670	117	22	95	1.5%
기타	3	10	165	73	36	37	1.9%
운동 및 경기용품 유통 및 임대업	-		10,425	360	103	257	2.1%
도매업	4	21	1,126	113	49	64	2.3%
소매업	3	13	8,456	149	29	120	3.2%
스포츠 및 레크레이션 용품 임대업	3	7	843	98	25	73	2.9%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4	28	22,467	175	18	157	2.5%

<표 I-11> 대분류별 표본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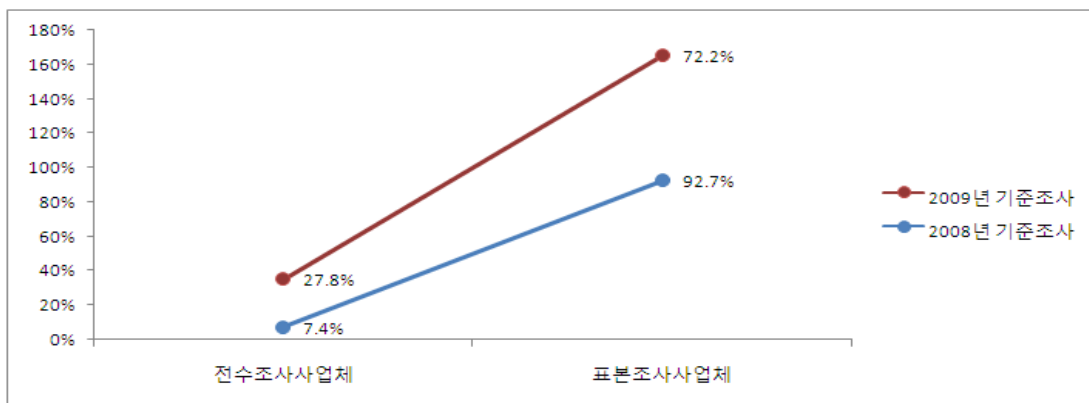
구 분	사업체수	비중
운동 및 경기용품제조업	595개	29.8%
경기 및 오락스포츠업	869개	43.5%
운동 및 경기용품 유통 및 임대업	360개	18.0%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175개	8.7%
합계	1,999개	100.0%

그림 .I-3 대분류별 모집단 및 표본 비율



- 총화기준에 따라 모집단을 총화한 후, 전수조사집단과 표본조사집단의 분포를 살펴보면 전수조사사업체는 557개(27.8%), 표본조사사업체는 1442(72.2%)개로 나타남
- 2008년 기준조사에서는 전수조사사업체가 221개(7.4%), 표본조사사업체가 2,785개(92.7%)로 나타남

그림 .I-4 연도별 전수 및 표본 조사 비율



□ L-H 층화법을 통해 추출한 1999개의 사업체 중 1711개 스포츠산업체가 최종적으로 조사 완료됨(일부 업종은 전수 및 기업체조사 실시)

<표 1-12> 최종 업종별 표본수

대분류	중분류	산업분류	표본수
1	기타비알콜음료 제조업	기타비알콜음료 제조업	3
	기타비알콜음료 제조업 요약		3
	섬유제품 및 의복제조업	천막 및 기타캔버스 제품 제조업	24
		기타직물제품제조업	9
		셔츠 및 체육복제조업	143
		그 외기타 봉제의복제조업	10
	섬유제품 및 의복제조업 요약		186
	가방 및 신발제조업	가방 및 기타보호용케이스제조업	36
		기타 신발제조업	29
		신발부분품 제조업	84
	가방 및 신발제조업 요약		149
	운동 및 경기용품제조업	무기 및 총포탄 제조업	4
		오락 및 스포츠용보트 건조업	1
		자전거 및 환자용 차량 제조업	5
		체조, 육상·체력 단련용 장비 제조업	24
		놀이터용 장비 제조업	13
		낚시 및 수렵용구 제조업	28
		기타 운동 및 경기용품 제조업	26
		기타 오락용품 제조업	2
		그 외 기타 분류되지 않은 제품제조업	8
운동 및 경기용품 제조업 요약		111	
운동 및 경기용품 제조업 요약		449	
2	경기장 운영업	실내경기장 운영업	16
		실외경기장 운영업	26
		경주장 운영업	11
	경기장 운영업 요약		53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스포츠클럽 운영업	22
		그 외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82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요약		104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골프장 운영업	96
		스키장 운영업	17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요약		113
	기타스포츠시설 운영업	종합 스포츠시설운영업	63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52
		수영장 운영업	5
		볼링장 운영업	1
		당구장 운영업	80
		골프연습장 운영업	52
		그 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9
무도장 운영업		3	
체육공원 및 유사 공원 운영업	8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요약		273	

	수상스포츠시설 운영업	낚시장 운영업	46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	86
수상스포츠시설 운영업 요약			132
	갬블링 및 베팅업	복권발행 및 판매업	1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60
갬블링 및 베팅업 요약			61
	기타 경기 및 오락스포츠업	매니저업	6
기타 경기 및 오락스포츠업 요약			6
경기 및 오락 스포츠업 요약			742
	운동 및 경기용품 도매업	운동 및 경기용품 도매업	92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도매업	19
운동 및 경기용품 도매업 요약			111
3	운동, 경기용품 및 자전거 소매업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107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40
운동, 경기용품 및 자전거 소매업 요약			147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용품 임대업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용품 임대업	92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용품 임대업 요약			92
운동 및 경기용품 유통·임대업 요약			350
4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스포츠 교육기관	124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46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요약			170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요약			170
총합계			1,711

1. 운동 및 경기용품 제조업, 2. 경기 및 오락 스포츠업, 3. 운동 및 경기용품 유통·임대업,
4.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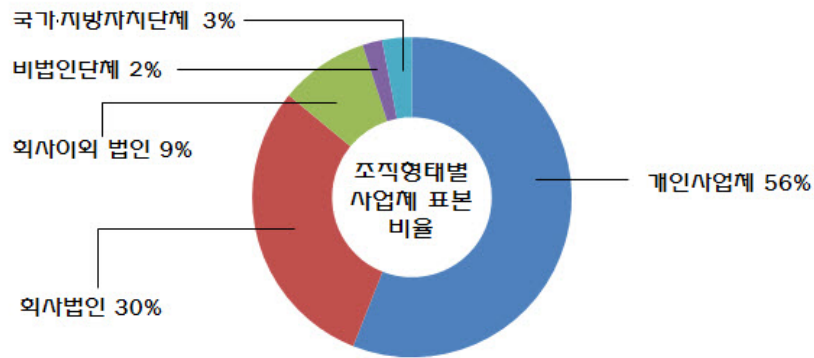
○ 조직형태별 사업체수는 개인사업체가 957개(56.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회사법인이 515개(30.0%), 회사이외 법인이 9% 등으로 각각 조사됨

<표 I -13> 조직형태별 사업체 수

(단위 : 개, %)

구분	사업체수	비중
개인사업체	957	56.0
회사법인	515	30.0
회사이외 법인	142	9.0
비법인단체	40	2.0
국가·지방자치단체	57	3.0
합 계	1,711	100.0

그림 . 1-5 조직형태별 사업체 표본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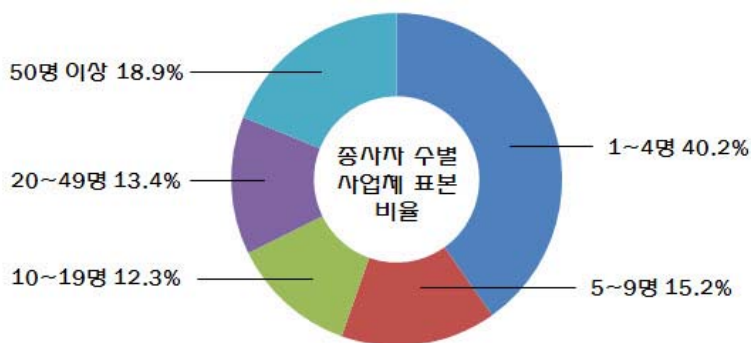
- 종사자 수가 1~4인 사업체가 전체 사업체 중 40.2%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율로 확인되었으며, 다음으로 5~9인 사업체가 15.2%로 나타나 10인 미만 사업체가 전체 55.4%를 차지하고 있음
- 2008년 기준조사에서는 4인이하 사업체 조사표본이 64.4%에서 2009년 기준조사는 40.2%로 24.2%가 감소함

<표 1-14> 종사자 수별 사업체 수

(단위 : 개, %)

구분	사업체수	비중
1~4 명	688	40.2
5~9 명	260	15.2
10~19 명	211	12.3
20~49 명	229	13.4
50 명 이상	323	18.9
합 계	1,711	100.0

그림 . 1-6 종사자 수별 사업체 표본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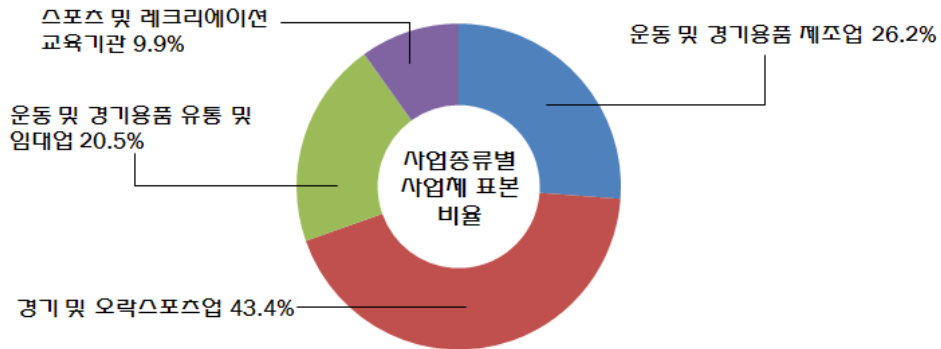
○ 경기 및 오락서비스업인 경기장운영업, 골프장·스키장운영업, 갠블링 및 베틀업 등의 사업체가 전체의 43.4%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표본 비율이었고, 다음으로 운동 및 경기용품제조업으로 26.2%, 운동 및 경기용품 유통업이 20.5%,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은 9.9% 순으로 각각 조사되었음

<표 1-15> 사업종류별 사업체 수

(단위 : 개, %)

구분	사업체수	비중
운동 및 경기용품제조업	449	26.2
경기 및 오락스포츠업	742	43.4
운동 및 경기용품 유통 및 임대업	350	20.5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170	9.9
합 계	1,711	100.0

그림 . 1-7 사업종류별 사업체 표본 비율



4.7 시장규모 추정

□ 스포츠산업 시장규모 추정

- 스포츠산업 시장규모 추정은 15개 중분류별 시장규모의 합으로 산정하였으며, 중분류별 시장규모는 전수조사집단의 시장규모와 가중치가 적용된 표본조사집단의 시장규모의 합으로 산정됨

□ 모수추정

■ 전체 스포츠산업 총계 추정식

$$\hat{X} = \sum_h \hat{X}_h$$

■ 15개 세분류 업종별 총계 추정식

$$\hat{X}_h = \hat{X}_{hc} + \hat{X}_{hs}$$

$$\hat{X}_{hc} = \sum_j x_{hj}$$

$$\hat{X}_{hs} = \sum_i \sum_j w_{hi} x_{hij} \quad \text{단, } w_{hi} = \frac{N_{hi}}{n_{hi}}$$

- 참자 h : 업종
 c : 전수층
 s : 표본층
 i : 표본층 내의 L-H층
 j : 조사된 기업체
- 변수 n : 표본수
 N : 모집단수
 \hat{X} : 특성치 총계
 x : 조사된 기업체의 특성치

□ 분산추정

- 전체 스포츠산업 분산 추정식

$$Var(\hat{X}) = \sum_h Var(\hat{X}_h)$$

- 각 업종의 시도별 분산 추정식

$$Var(\hat{X}_h) = Var(\hat{X}_{hs}) = \sum_i Var(\hat{X}_{hi}) = \sum_i \frac{N_{hi}(N_{hi} - n_{hi})}{n_{hi}} s_{hi}^2$$

$$\text{단, } s_{hi}^2 = \frac{1}{n_{hi} - 1} \left(\sum_j x_{hij}^2 - \frac{(\sum_j x_{hij})^2}{n_{hi}} \right)$$

□ 표준오차 및 상대표준오차

- $SE(\hat{X}) = \sqrt{V(\hat{X})}$

- $\hat{CV} = \frac{SE(\hat{X})}{\hat{X}} \times 100$

<표 I -16> 매출액 표준오차 및 변동계수

(단위 : 백만원)

대분류	중분류	Sum	StdDev	cvsum
운동 및 경기용품제조업	기타 비알콜음료 제조업	178374.5	-	-
	섬유제품 및 의복제조업	2526867	291748.2	0.115458
	가방 및 신발 제조업	906267.3	106413.5	0.11742
경기 및 오락서비스업	운동 및 경기용품 제조업	988456.8	86054.99	0.08706
	경기장 운영업	3342474	37975.06	0.011361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1292571.2	95077.71	0.098011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3682576	185322.5	0.050324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4217933	1158008	0.274544
	수상스포츠시설 운영업	82481.88	7845.102	0.095113
	갠블링 및 베팅업	10499278	11587.27	0.001305
	기타 경기 및 오락스포츠업	21085.74	258.2095	0.012246
	운동 및 경기용품유통업	운동 및 경기용품 도매업	2429169	128042.6
운동, 경기용품 및 자전거 소매업		2395451	302632.2	0.126336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용품 임대업		48127.58	7617.775	0.158283
스포츠 교육서비스업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832847.3	57378.87	0.068895
합계		33,443,960.3	1,265,378	0.038204

4.8 조사의 한계 및 유용성

□ 조사의 한계

- 매년 통계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체기초통계 조사와 중복되는 내용으로 인해 기업체의 비협조적 태도 유발
- 표본명부 대상이 실질적으로 스포츠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체가 아닌 경우가 많아 표본대체에 적합한 대상사업체를 선정하는데 시간과 노력이 많이 소요됨
- 조사표 입력에 있어서 입력프로그램을 엑셀프로그램으로 자체 개발 운용하여 off line으로 운영하는 문제점 발생
 - 실시간으로 업데이트가 되지 않음
 -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동시 입력이 불가능
 - 자료취합 또한 수동적으로 이루어져 일부 내검에 문제점 발생
- 현장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조사대상 사업체가 산재되고 표본대체가 많아 조사원의 현장조사에 시간 및 경비가 많이 소요됨
- 산업분류의 구분이 불확실하며, 중분류내 산업분류간 동질성이 부족하여 특성항목별 조사사항에 애로 발생
- 스포츠산업 특수분류에 정의되어 있는 세부항목의 범위가 불확실하여 현장조사시 접목에 애로 발생

□ 2009년 기준조사의 유용성

- 스포츠산업관련 통계의 최초 국가승인통계 지정 확보
 - 통계법 제18조 1항 및 제20조에 의해 승인된 일반통계(승인번호 제11321호)
- 모집단 자료 활용 측면에서 살펴보면, 2009년 기준 전국사업체조사의 결과 중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산업특수분류」 중 스포츠산업분류에 해당하는 사업체를 모집단의 기초로 조사를 실시하여 통계신뢰도 확보에 기여함
- 단조로운 설문 조사표를 가능한 구체화하여 통계조사 결과에 대한 양적, 질적 분석 확대
 - 조직형태(개인사업체, 회사법인, 회사이외법인, 국가지방자치단체)
 - 종사자수(상용, 임시·일용,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기타종사자)
 - 인력 충원계획, 연간 급여액, 사업실적, 특성항목, 설문문항 등 추가
- 사전 조사자료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조사결과 내검 및 집계를 철저히 하여 통계정확성을 제고
 - 1차로 조사항목간 관련사항 점검 후 기 조사된 연간통계자료와 비교·검토하여 보완
 - 행정자료(국세청)와 비교·검토를 통한 정확성 제고

Ⅱ

스포츠산업체 일반현황



1. 스포츠산업체 일반 현황

1.1 사업체 수

1) 모집단 사업체 보정

- 본 조사는 2009년 기준 사업체기초통계조사를 기준으로 추출한 모집단 총 82,859개 중 모집단 보정을 통해 62,184개(추정)의 스포츠산업체를 확인하였음
- 모집단 보정은 모집단 리스트에서 스포츠산업 관련 재화, 용역, 생산 등과 관련이 없는 업체를 조사하여 제외시켰으며, 유고, 업종변경 등의 업체도 삭제하였음
- 따라서 이들 사업체에 대해서는 업종을 재분류 하였으며, 또한 추가적으로 실태조사가 어려운 업체가 발생하여 모집단을 수정하였음
- 당초 표본설계 결과와 모집단 보정을 반영한 결과는 아래 표와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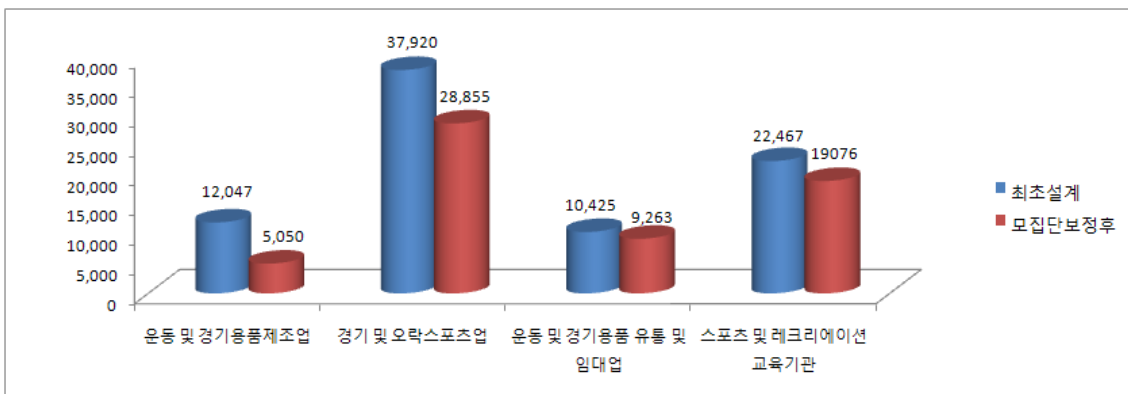
<표 II -1> 표본설계 내역과 보정결과 비교

(단위 : 천개)

	모집단 사업체수		
	당초 설계	모집단 보정	차이
전 체	82.9	62.2	20.7
운동 및 경기용품제조업	12.0	5.1	6.9
경기 및 오락스포츠업	38.0	28.9	9.1
운동 및 경기용품 유통 및 임대업	10.7	9.3	1.4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22.5	19.0	3.5

그림 . II -1 표본설계 내역과 보정결과 비교

(단위 : 개)



<표 II-2> 15개 공표단위(중분류) 별 사업체수 현황

(단위 : 개, %)

대분류	중분류	사업체수	비중
운동 및 경기용품제조업	기타 비알콜음료 제조업	3	0.005
	섬유제품 및 의복제조업	3,117	5.0
	가방 및 신발 제조업	1,191	1.9
	운동 및 경기용구 제조업	739	1.2
경기 및 오락서비스업	경기장 운영업	191	0.3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405	0.7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335	0.5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26,744	43.0
	수상스포츠시설 운영업	1,102	1.8
	갬블링 및 베팅업	65	0.1
	기타 경기 및 오락스포츠업	13	0.02
운동 및 경기용품유통업	운동 및 경기용품 도매업	867	1.4
	운동, 경기용품 및 자전거 소매업	7,687	12.4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용품 임대업	709	1.1
스포츠 교육서비스업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19,016	30.6
합계		62,184	100.0

2) 설립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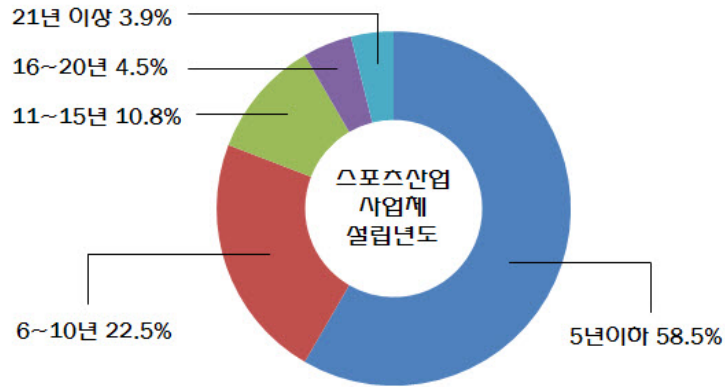
- 스포츠산업 사업체의 설립년도의 비율을 살펴보면 5년 이하의 사업체가 전체 58.5%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6~10년의 사업체가 22.5%로 조사됨
- 이는 10년이하의 사업체 비율이 81%를 차지하고 있어 스포츠산업이 신생산업으로써 성장잠재력은 존재하지만 10년이상 생존하고 있는 업체 비율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음
- 특히, 경기·오락서비스업의 경우 설립년도가 5년이하의 업체가 31.3%를 차지하고 있어 스포츠 서비스산업으로 사업을 확장되고 있는 동시에 퇴출위험성도 높은 것으로 판단됨

<표 II-3> 설립년도 비율

(단위 : %)

구분	5년이하	6~10년	11~15년	16~20년	21년 이상
운동 및 경기용품제조업	2.9	2.8	1.3	0.7	0.7
경기 및 오락스포츠업	31.3	9.7	3.5	0.8	0.8
운동 및 경기용품 유통 및 임대업	7.8	3.4	1.1	1.1	1.8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16.5	6.6	4.9	1.9	0.6
합계	58.5	22.5	10.8	4.5	3.9

그림 . II-2 설립년도 비율



3) 조직형태별 사업체 수

<표 II-4> 조직형태별 사업체 수

(단위 : 개, %)

구분	대분류	사업체수	비중
개인사업체	운동 및 경기용품제조업	4,122	6.6
	경기 및 오락서비스업	26,692	42.9
	운동 및 경기용품유통업	8,057	13.0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업	18,363	29.5
회사법인	운동 및 경기용품제조업	928	1.5
	경기 및 오락서비스업	1,035	1.7
	운동 및 경기용품유통업	1,204	1.9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업	308	0.5
회사외 법인	운동 및 경기용품제조업	-	-
	경기 및 오락서비스업	372	0.6
	운동 및 경기용품유통업	-	-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업	204	0.3
비법인단체	운동 및 경기용품제조업	-	-
	경기 및 오락서비스업	232	0.4
	운동 및 경기용품유통업	1	0.002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업	138	0.2
국가·지방자치단체	운동 및 경기용품제조업	-	-
	경기 및 오락서비스업	524	0.8
	운동 및 경기용품유통업	1	0.002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업	3	0.005
합계		62,184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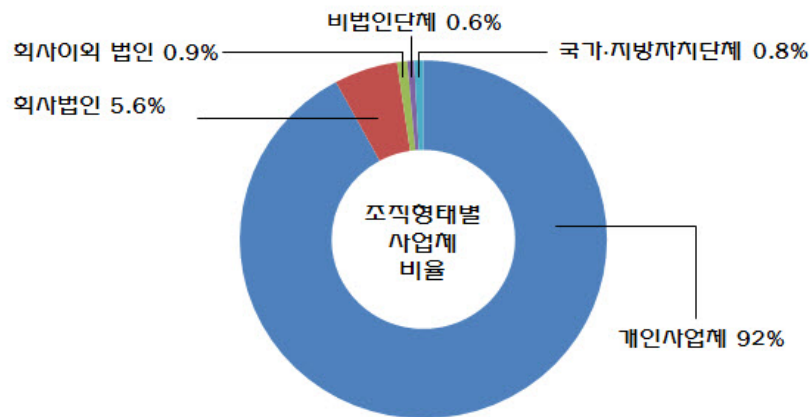
□ 개인사업체가 스포츠산업 전체 사업체 중 92.0%를 차지하고 있어 대다수이며, 다음으로 회사법인이 5.6%를 점유한 것으로 여전히 소규모 영세한 업체가 다수를 이루고 있음

<표 II -5> 조직형태별 사업체 수

(단위 : 개, %)

구분	사업체수	비중
개인사업체	57,234	92.0
회사법인	3,475	5.6
회사외 법인	576	0.9
비법인단체	371	0.6
국가·지방자치단체	528	0.8
합 계	62,184	100.0

그림 . II -3 조직형태별 사업체 비율



4) 종사자수별 사업체 수

<표 II-6> 종사자 수별 사업체 수

(단위 : 개, %)

구 분	대분류	사업체수	비중
1~4명	운동 및 경기용품제조업	2,971	4.8
	경기 및 오락서비스업	25,494	41.0
	운동 및 경기용품유통업	8,532	13.7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업	18,664	30.0
5~9명	운동 및 경기용품제조업	1,155	1.9
	경기 및 오락서비스업	1,861	3.0
	운동 및 경기용품유통업	546	0.9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업	289	0.5
10~19명	운동 및 경기용품제조업	552	0.9
	경기 및 오락서비스업	644	1.0
	운동 및 경기용품유통업	124	0.2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업	42	0.1
20~49명	운동 및 경기용품제조업	286	0.5
	경기 및 오락서비스업	387	0.6
	운동 및 경기용품유통업	47	0.1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업	21	0.03
50명 이상	운동·경기용품제조업	86	0.1
	경기·오락서비스업	469	0.8
	운동·경기용품유통업	14	0.02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업	-	-
합 계		62,184	100.0

□ 종사자 수가 1~4인 사업체가 전체 사업체 중 89.5%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율이며, 다음으로 5~9인 사업체가 6.1%로 10인 미만 사업체가 95.6%를 차지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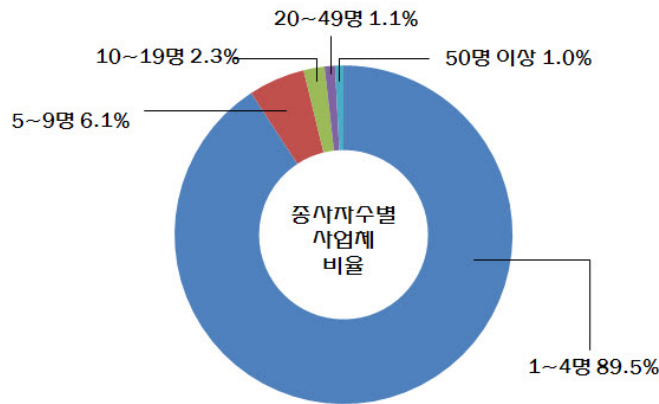
○ 20인 이상 사업체는 단 2.1%에 불과해 대부분의 스포츠산업체가 소규모로 구성되어 있음

<표 II-7> 종사자 수별 사업체 수

(단위 : 백개, %)

구 분	사업체수	비중
1~4명	557	89.5
5~9명	38	6.1
10~19명	14	2.3
20~49명	7	1.1
50명 이상	6	1.0
합 계	622	100.0

그림 . II -4 종사자 수별 사업체 비율



5) 사업종류별 사업체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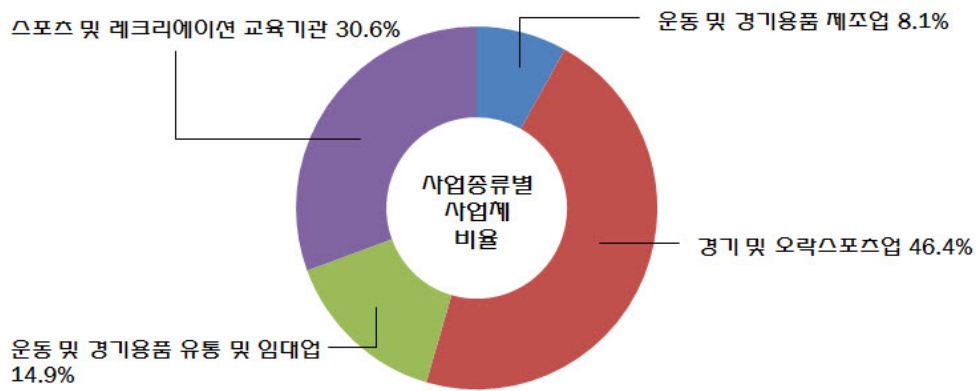
- 경기 및 오락서비스업인 경기장운영업, 골프장 및 스키장운영업, 갠블링 및 베탱업 등의 사업체가 전체의 46.4%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냈고, 다음으로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은 30.6%, 유통임대업이 14.9%를 점유하고 있음
- 특히 기타스포츠 시설운영업(수영장, 볼링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체력단련시설 등)이 전체 스포츠산업체 중 43%를 차지하고 있음

<표 II -8> 사업종류별 사업체 수

(단위 : 백개, %)

구 분	사업체수	비중
운동 및 경기용품제조업	50	8.1
경기 및 오락스포츠업	289	46.4
운동 및 경기용품 유통 및 임대업	93	14.9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190	30.6
합 계	622	100.0

그림 . II -5 사업종류별 사업체 비율



Ⅲ

스포츠산업 실태조사 결과



1. 총괄

1.1 2009년 기준조사 스포츠산업 요약

- 2009년 기준 스포츠산업을 요약하면 스포츠산업 사업체수를 추정하면 6만2,184개, 스포츠산업 매출액은 33조4,439억원으로 집계되었으며, 매출액 중 내수가 32조5,745억원, 수출이 8,740억원으로 각각 조사됨
- 2009년 기준 스포츠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체는 전년대비 9,400개 늘어난 6만2,184개로 추정되었음
- 전년대비 모집단 차이는 조사별 목표 모집단과 산업분류 범위 등의 변화에 기인
- 스포츠산업 종사자수는 22만4천명으로 경기 및 오락서비스업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스포츠 교육서비스업의 종사자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전체 스포츠산업 매출액 33조4,439억원 중 영업비용 28조1,314천억원을 제외하면, 영업이익은 4조9,940억으로 14.9%의 이익률을 나타내고 있음

<표 Ⅲ-1> 2009년 기준 스포츠산업 전체 요약

구 분	업체수 (개)	종사자 (명)	매출액 (억원)	내수 (억원)	수출 (억원)	영업이익 (억원)
스포츠산업	62,184	224,000	334,439	325,745	87,400	49,940

1.2 연도별 스포츠산업 규모 추이

- 2008년 기준조사 대비 매출액 증가율은 26.9%로 26조3,614억원에서 33조4,439억원로 상승한 것으로 집계되었음
- 2008년 기준조사에서는 스포츠용품업 모집단이 2000개에 불과했지만 2009년 기준조사에서는 14,000개로 목표 모집단의 차이와 조사범위에 따라 매출액 차이가 나타남

- 이 같은 큰 폭의 증가는 2008년도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인하여 제조업분야에 매출이 부진했지만 2009년도 경제회복에 따른 결과로 추정되며, 스포츠용품 제조업과 유통업의 모집단 수가 증가한 결과로도 예상됨
- 2008년 기준조사는 스포츠서비스업의 포괄범위를 출판업, 회원권대행판매업, 온라인스포츠업 등이 포함되었지만 매출액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음
- 단, 한국표준산업분류에 포함되지 않은 스포츠미디어업(방송, 신문업)은 2차자료(2009년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집 등)를 활용하여 매출액에 포함시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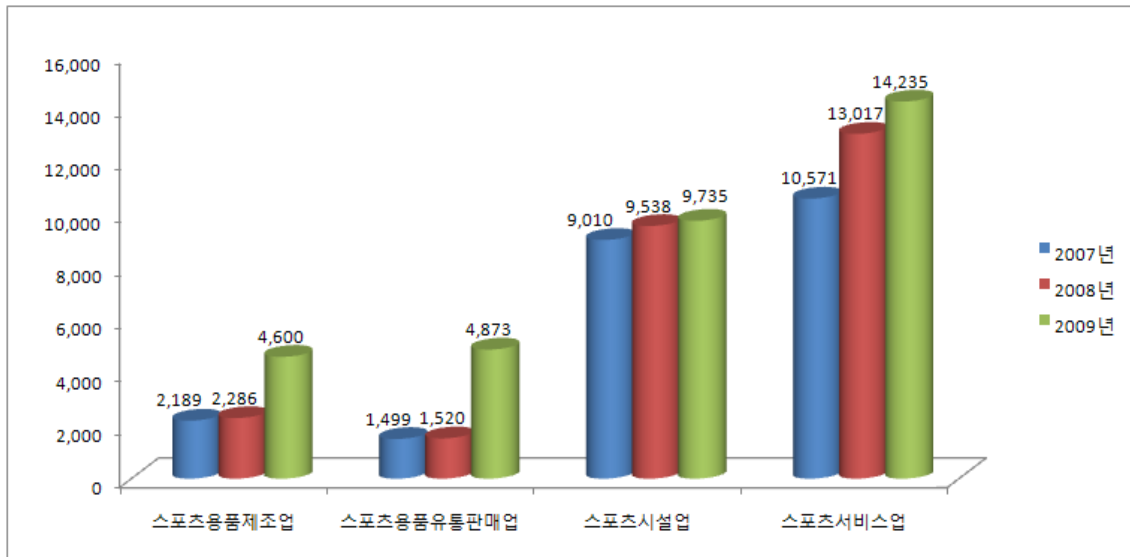
<표 Ⅲ-2> 연도별 스포츠산업 규모 추정⁶⁾

(단위 : 십억원, %)

분류	2007년 기준	2008년 기준	2009년 기준	연평균 증감률
스포츠용품 제조업	2,189	2,286	4,600	45.0
스포츠용품 유통판매업	1,499	1,520	4,873	80.3
스포츠시설업	9,010	9,538	9,735	3.9
스포츠서비스업	10,571	13,017	14,235	16.0
합계	23,269	26,361	33,443	19.9

그림 .Ⅲ-1 연도별 스포츠산업 규모 추이

(단위 : 십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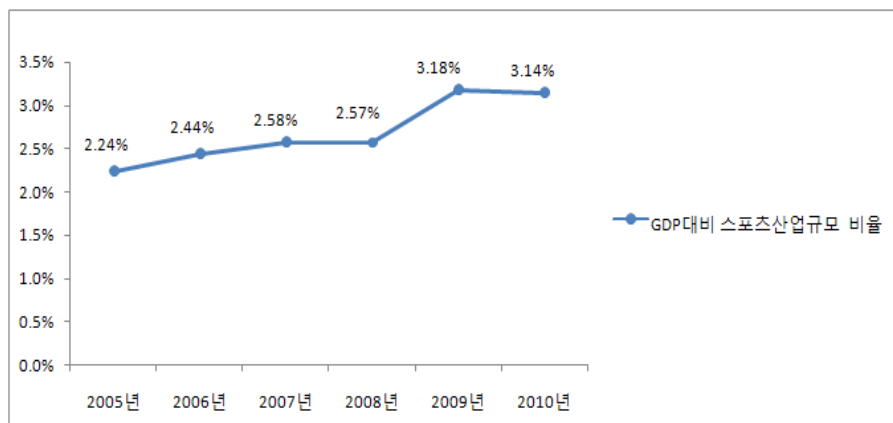
6) 2008년 기준조사와 비교를 위해 2009년 기준조사에 사용된 스포츠산업 분류를 재분류하여 비교사용

- 국가 GDP 대비 스포츠산업 비율을 살펴보면 2005년 2.24%에서 2010년(추정) 3.14%로 꾸준히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남
-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스포츠산업 연평균 성장률은 12.8%로 높게 나타났으나 2009년 기준조사에서 모집단과 분류체계 적용 변화 등의 이유로 다소 높은 증가율이 나타남

<표 Ⅲ-3> GDP대비 스포츠산업규모 비율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추정)
GDP(원)	847조9천억	915조9천억	901조2천억	1,023조9천억	1,050조	1,100조
스포츠산업규모(원)	19조6507억	22조3642억	23조2698억	26조3,614억	33조4,439억	34조5,141억
GDP대비 스포츠산업비율	2.24%	2.44%	2.58%	2.57%	3.18%	3.14%
증가율(%)		13.81%	4.05%	13.29%	26.86%	3.20%

그림 . Ⅲ-2 GDP대비 스포츠산업규모 비율



1.3 스포츠산업 부가가치

- 스포츠산업 부가가치 유발계수는 한국은행 산업연관표를 근거로 산출함
- 스포츠산업 부가가치 유발계수는 2000년 이후 차츰 감소 추이를 나타내고 있음. 국내 전체산업 역시 같은 추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분류별 제조업과 서비스업도 2000년 이후 감소추세를 나타냄
- 단, 스포츠산업 전반적으로 전체산업에 비해 부가가치 유발계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2008년 기준 운동 및 경기용품 제조업의 경우 부가가치 유발계수가 0.603으로 국내 전체 제조업 0.566 보다 다소 높게 나타남
- 2008년 기준 경기 및 오락스포츠업은 0.891 로서 국내 전체 서비스업 0.819 보다 높게 나타남. 또한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유발계수역시 0.845로 높게 나타남
- 이는 스포츠산업 전체가 국내 전체산업에 비해 부가가치 유발이 높고 분류별 비교 역시 스포츠산업 관련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전체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비해 부가가치 유발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III-4> 스포츠산업 부가가치 유발계수 추이

대분류	중분류	2000년	2005년	2007년	2008년
운동 및 경기용품 제조업	기타 비알콜음료 제조업	0.839	0.755	0.738	0.690
	섬유제품 및 의복 제조업	0.688	0.746	0.734	0.701
	가방 및 신발 제조업	0.621	0.641	0.584	0.529
	운동 및 경기용품 제조업	0.724	0.659	0.551	0.493
운동 및 경기용품 제조업		0.718	0.700	0.652	0.603
경기 및 오락스포츠업	경기장 운영업	0.883	0.908	0.905	0.874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수상스포츠시설 운영업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0.916	0.921	0.914	0.886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갬블링 및 베팅업	0.918	0.937	0.934	0.913
기타 경기 및 오락스포츠업					
경기 및 오락스포츠업		0.906	0.922	0.918	0.891
운동 및 경기용품 임대업	운동 및 경기용품 도매업	0.889	0.893	0.887	0.864
	운동, 경기용품 및 자전거 소매업	0.931	0.920	0.911	0.888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용품 임대업	-	-	-	-
운동 및 경기용품 임대업		0.91	0.907	0.899	0.876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0.862	0.893	0.877	0.845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0.862	0.893	0.877	0.845
전체산업	전체산업(평균)	0.754	0.741	0.722	0.666
	제조업	0.664	0.650	0.626	0.566
	서비스업	0.868	0.865	0.855	0.819

2. 매출액

2.1 사업종류별 매출액 현황

<표 Ⅲ-5> 스포츠산업 산업분류별 매출액

(단위 : 억원, %)

대분류	중분류	매출액	비중
운동 및 경기용품 제조업	기타 비알콜음료 제조업	1,784(3.9)	0.5
	섬유제품 및 의복 제조업	25,269(54.9)	7.6
	가방 및 신발 제조업	9,062(19.7)	2.7
	운동 및 경기용품 제조업	9,884(21.5)	3
운동 및 경기용품 제조업		45,999(100.0)	(13.8)
경기 및 오락스포츠업	경기장 운영업	33,425(14.4)	10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12,926(5.6)	3.9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36,825(15.9)	11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42,179(18.2)	12.6
	수상스포츠시설 운영업	825(0.4)	0.2
	갬블링 및 베팅업	104,993(45.4)	31.4
	기타 경기 및 오락스포츠업	211(0.1)	0.1
경기 및 오락스포츠업		231,384(100.0)	(69.2)
운동 및 경기용품 유통·임대업	운동 및 경기용품 도매업	24,292(49.9)	7.3
	운동, 경기용품 및 자전거 소매업	23,955(49.1)	7.1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용품 임대업	481(1.0)	0.1
운동 및 경기용품 유통·임대업		48,728(100.0)	(14.5)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8,328(100)	2.5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8,328(100.0)	(2.5)
총합계		334,439	100.0

□ 사업종류별 매출액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 및 오락서비스의 매출이 전체 69.2%를 차지하고 있어 스포츠산업 중 가장 큰 규모이며, 운동 및 경기용품유통이 14.5%, 운동 및 경기용품제조업이 13.8%,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이 2.5%의 순으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2008년에 비해 운동 및 경기용품제조업, 운동 및 경기용품유통업의 시장규모가 대폭 늘어남 이는 2008년 기준조사에서 약 2000개의 모집단을 사용한 반면 2009년 기준조사는 모집단 수를 14,400개까지 확보할 수 있었기에 시장규모가 급격히 증가함
- 경기 및 오락서비스의 매출이 상대적으로 큰 것은 동 업종에 경륜, 경쟁, 경마 및 스포츠복권 등이 포함되어 있어 이들의 매출액이 매우 크기 때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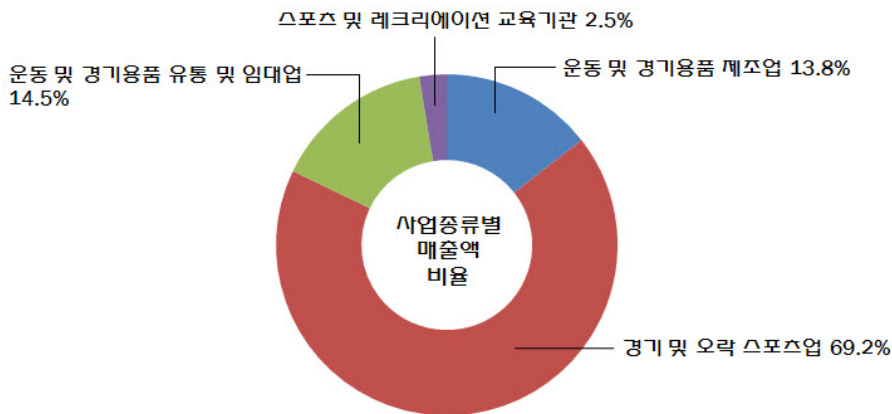
○ 2009년 기준조사에서 최초로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의 규모를 추정한 결과 전체의 2.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표 III-6> 사업종류별 매출액

(단위 : 십억원, %)

구분	매출액	비중
운동 및 경기용품제조업	4,600	13.8
경기 및 오락스포츠업	23,138	69.2
운동 및 경기용품 유통 및 임대업	4,872	14.5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833	2.5
합 계	33,443	100.0

그림 . III-3 사업종류별 매출액 비율



2.2 조직형태별 매출액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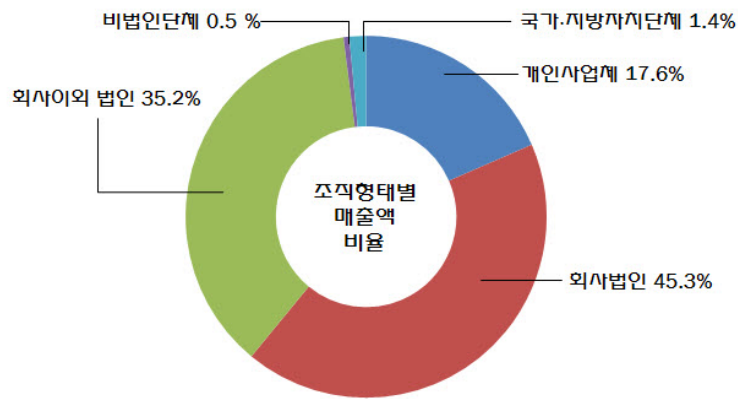
□ 조직형태별 매출액을 살펴보면 회사법인이 45.3%, 회사이외 법인이 35.2%로 스포츠산업 전체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개인사업체는 17.6%로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음

<표 III-7> 조직형태별 매출액

(단위 : 십억원, %)

구분	매출액	비중
개인사업체	5,882	17.6
회사법인	15,139	45.3
회사이외 법인	11,782	35.2
비법인단체	167	0.5
국가·지방자치단체	473	1.4
합 계	33,443	100.0

그림 . Ⅲ-4 조직형태별 매출액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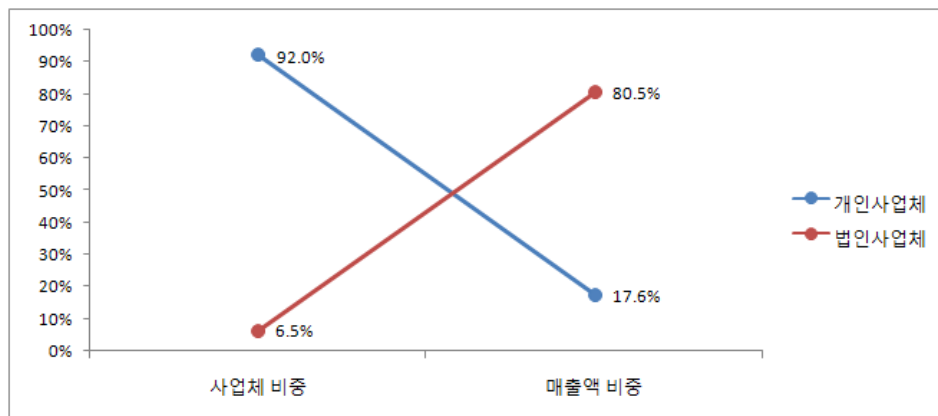
- 전체 스포츠산업 사업체 중 법인사업체의 비중은 6.5%(4,100개)에 불과하지만 매출액은 전체 80.5%를 차지하고 있음
- 이는 90%이상의 개인사업체가 매우 영세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음

<표 Ⅲ-8> 조직형태별 사업체수 & 매출액

(단위 : 천개, 십억원, %)

구 분	사업체수(비중)	매출액(비중)
개인사업체	57.2(92.0)	5,882(17.6)
회사법인	4.1(6.5)	26,921(80.5)
합 계	61.3(98.5)	32,803(98.1)

그림 . Ⅲ-5 조직형태별 사업체수 & 매출액 비교



2.3 종사자 규모별 매출액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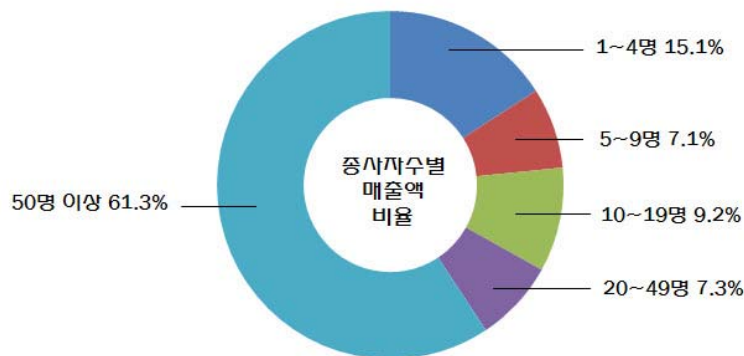
- 종사자 규모별 매출액 현황을 살펴보면 50인 이상의 사업체 매출액이 전체의 61.3%를 차지하고 있어 스포츠산업에서 차지하고 있는 중견기업의 비중이 상당히 높으며 산업전반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종사자 규모가 1~4인 사업체수가 89.5%를 차지하고 있지만 매출액은 15.1%에 그치고 있어 업체의 유고발생률이 높으며, 지속적 성장의 한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산업구조를 지니고 있음
- 이는 소규모 사업장의 지속적 성장과 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음

<표 III-9> 종사자수별 매출액

(단위 : 십억원, %)

구분	매출액	비중
1~4명	5,056	15.1
5~9명	2,386	7.1
10~19명	3,076	9.2
20~49명	2,434	7.3
50명 이상	20,491	61.3
합계	33,443	100.0

그림 . III-6 종사자수별 매출액 비율



3. 종사자수

3.1 사업종류별 종사자 현황

<표 Ⅲ-10> 스포츠산업 산업분류별 종사자수

(단위 : 백명, %)

대분류	중분류	종사자수	비율
운동 및 경기용품 제조업	기타 비알콜음료 제조업	9(3)	0.4
	섬유제품 및 의복 제조업	169(56.1)	7.5
	가방 및 신발 제조업	61(20.3)	2.8
	운동 및 경기용품 제조업	62(20.6)	2.8
운동 및 경기용품 제조업		301(100)	(13.5)
경기 및 오락스포츠업	경기장 운영업	75(5.4)	3.3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43(3.1)	1.9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360(26.2)	16.1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738(53.6)	32.9
	수상스포츠시설 운영업	34(2.5)	1.5
	캠핑 및 배팅업	125(9.1)	5.6
	기타 경기 및 오락스포츠업	1(0.1)	0.04
경기 및 오락스포츠업		1,376(100)	(61.3)
운동 및 경기용품 유통·임대업	운동 및 경기용품 도매업	61(27.2)	2.7
	운동, 경기용품 및 자전거 소매업	146(65.2)	6.5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용품 임대업	17(7.6)	0.8
운동 및 경기용품 유통·임대업		224(100)	(10)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339(100)	15.2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339(100)	(15.2)
총합계		2,240(100)	100

- 운동 및 경기용품 제조업의 종사자수를 살펴보면 섬유제품 및 의복 제조업의 비율이 56.1%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됨
- 섬유제품 및 의복 제조업은 구명자켓, 구명벨트, 스포츠의류 제조 및 부분품으로 의류 제조 및 부분품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종사자 비율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 경기 및 오락스포츠업의 경우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의 종사자 비율이 과반수가 넘는 53.6%로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 수영장, 볼링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으로 가장 보편적인 스포츠시설 운영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 운동 및 경기용품 유통·임대업의 경우 운동, 경기용품 및 자전거 소매업의 종사자 비율이 65.2%로 가장 높게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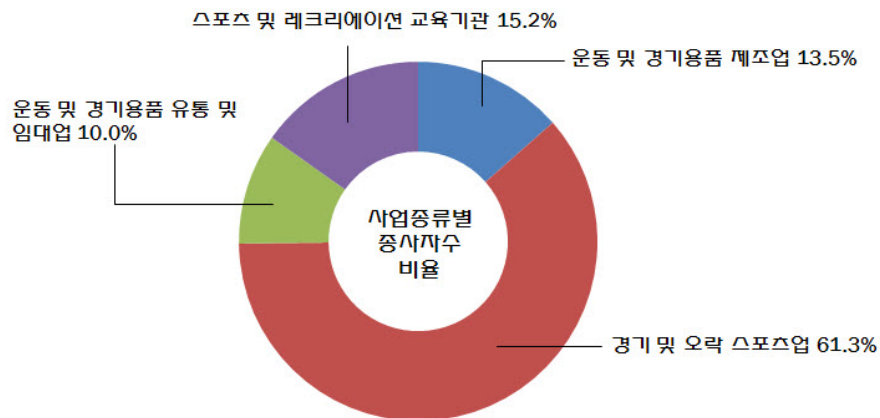
- 전체 스포츠산업 종사자수는 22만4천명으로 파악할 수 있는데 이는 문화산업 종사자 44만6천명에 약 절반에 미치는 수준으로 확인할 수 있음
- 사업종류별 종사자수는 경기 및 오락서비스업이 13만8천명, 61.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서비스업 중심의 사업에 종사자가 집중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표 Ⅲ-11> 사업종류별 종사자수

(단위 : 천명, %)

구 분	종사자수	비중
운동 및 경기용품제조업	30	13.5
경기 및 오락스포츠업	138	61.3
운동 및 경기용품 유통 및 임대업	22	10.0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34	15.2
합 계	224	100.0

그림 . Ⅲ-7 사업종류별 종사자수 비율



3.2 조직형태별 종사자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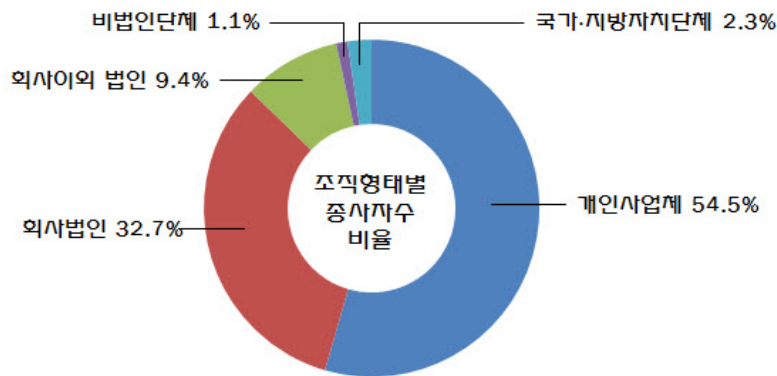
- 조직형태별 종사자수를 살펴보면 개인사업체에 종사하는 인원이 12만2천명으로 전체 54.5%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회사법인이 32.7%, 회사이외 법인이 9.4% 순으로 각각 조사됨

<표 Ⅲ-12> 조직형태별 종사자수

(단위 : 천명, %)

구분	종사자수	비중
개인사업체	122	54.5
회사법인	73	32.7
회사외의 법인	21	9.4
비법인단체	3	1.1
국가·지방자치단체	5	2.3
합계	224	100.0

그림 . Ⅲ-8 조직형태별 종사자수 비율



3.3 종사자 규모별 종사자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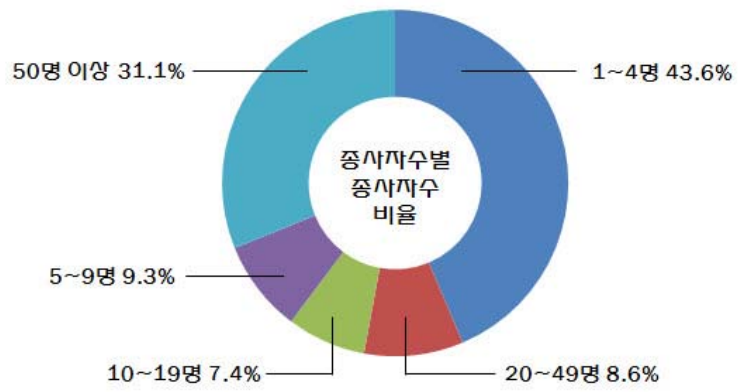
□ 종사자 규모별 종사자수 현황을 살펴보면 1~4인 사업체수에 종사하는 인원이 9만8천명으로 전체 종사자의 43.6%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50명이상 규모의 사업체에 6만 9천명, 31.1%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표 Ⅲ-13> 종사자 수별 종사자

(단위 : 천명, %)

구분	종사자	비중
1~4명	98	43.6
5~9명	21	9.3
10~19명	17	7.4
20~49명	19	8.6
50명 이상	69	31.1
합계	224	100.0

그림 . Ⅲ-9 종사자 수별 종사자수 비율



4. 사업실적

4.1 스포츠산업 전체 실적

<표 Ⅲ-14> 스포츠산업 전체실적

(단위 : 십억원, %)

대분류	중분류	스포츠내수액		스포츠영업비용		스포츠영업이익	
1	기타 비알콜음료 제조업	178	0.5	171	0.6	7	0.1
	섬유제품 및 의복 제조업	2,306	7.1	2,383	8.5	144	2.9
	가방 및 신발 제조업	626	1.9	789	2.8	117	2.4
	운동 및 경기용품 제조업	793	2.4	872	3.1	117	2.3
운동 및 경기용품 제조업 요약		3,903	12.0	4,215	15.0	385	7.7
2	경기장 운영업	3,341	10.3	3,231	11.5	111	2.2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1,290	4.0	969	3.4	7	0.0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3,683	11.3	2,980	10.6	702	14.1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4,218	13.0	2,494	8.9	1,723	34.5
	수상스포츠시설 운영업	82	0.3	57	0.2	26	0.5
	캠블링 및 베팅업	10,499	32.2	9,367	33.3	1,132	22.7
	기타 경기 및 오락스포츠업	21	0.1	20	0.1	1	0.0
경기 및 오락스포츠업 요약		23,134	71.0	19,118	68.0	3,702	74.1
3	운동 및 경기용품 도매업	2,256	6.9	2,193	7.8	236	4.7
	운동, 경기용품 및 자전거 소매업	2,395	7.4	2,077	7.4	318	6.4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용품임대업	48	0.1	35	0.1	13	0.3
운동 및 경기용품 유통·임대업 요약		4,699	14.4	4,305	15.3	567	11.4
4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833	2.6	493	1.8	340	6.8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요약		833	2.6	493	1.8	340	6.8
총합계		32,569	100.0	28,131	100.0	4,994	100.0

1 : 운동 및 경기용품 제조업, 2 : 경기 및 오락스포츠업, 3 : 운동 및 경기용품 유통·임대업,

4 :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 스포츠산업 매출액은 33조4,439억원으로 영업비용 28조1,314억원을 제외하면, 영업이익은 4조9940억원으로 14.9%의 이익률을 나타내고 있음

○ 스포츠산업 전체 매출액 중 내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97.3%로 내수시장 위주의 산업구조를 지니고 있음

○ 수출비중이 2.7%에 불과하여 내수와 수출의 불균형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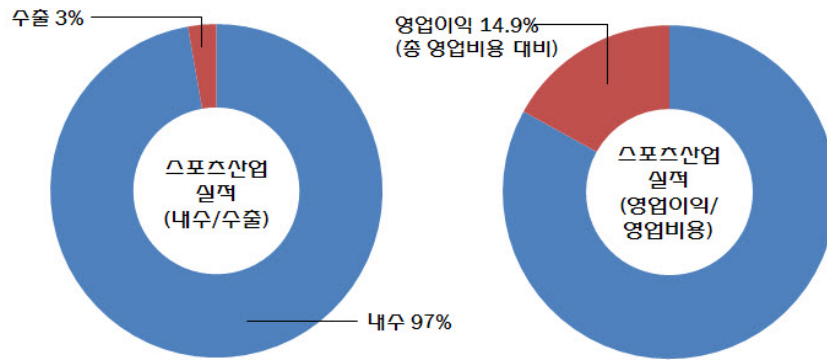
○ 따라서 수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스포츠용품산업의 성장이 필요하며, 전체 스포츠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프로스포츠 및 생활스포츠 등 서비스업의 활성화가 필수적임

<표 Ⅲ-15> 스포츠산업 사업실적

(단위 : 십억원, %)

구 분	매출액 (A)	매출액		영업비용	영업이익 (B)	이익률 (A)/(B)
		내수	수출			
스포츠산업	33,443	32,569	874	28,131	499	14.9

그림 . Ⅲ-10 스포츠산업 사업실적 비율



4.2 사업종류별 내수·수출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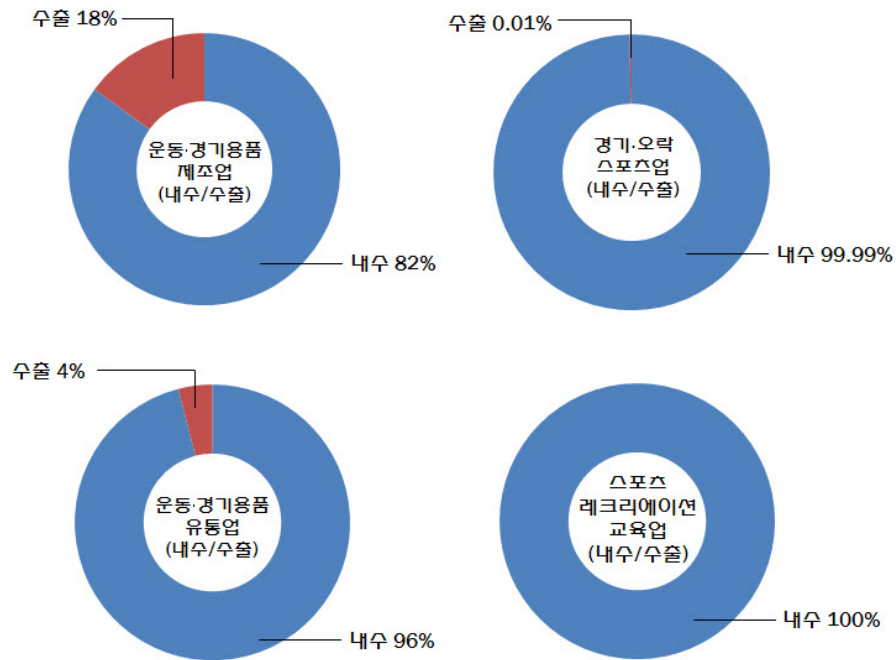
- 전체 스포츠산업 매출액 중 내수비율은 97.3%에 이르며 특히 경기 및 오락서비스업과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업은 100%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단, 운동 및 경기용품제조업의 경우 17.9%의 수출비중은 국내 전체 제조업 수출비중과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치임. 스포츠용품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정책지원을 실행하고 있어 장기적인 계획을 통한 지속적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수출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

<표 Ⅲ-16> 사업종류별 내수·수출실적

(단위 : 십억원, %)

구 분	매출액 (A)	매출액	
		내수	수출
운동 및 경기용품제조업	4,600	3,903(82.1)	697(17.9)
경기 및 오락스포츠업	23,137	23,134(99.9)	3(0.01)
운동 및 경기용품 유통 및 임대업	4,873	4,699(96.3)	174(3.7)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833	833(100.0)	-

그림 . Ⅲ-11 사업종류별 내수/수출 실적 비율



4.3 사업종류별 영업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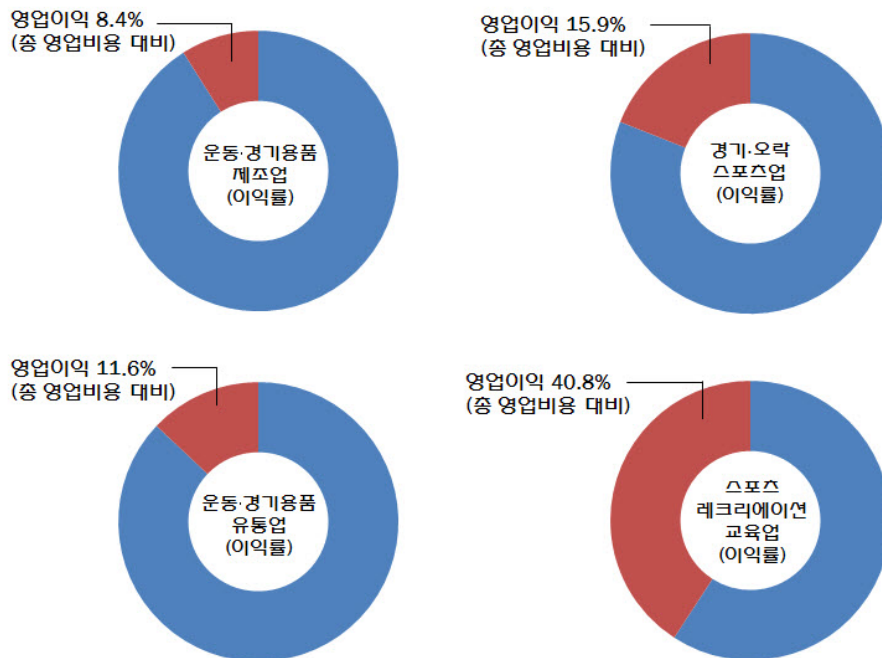
- 스포츠산업의 사업종류별 영업실적을 살펴보면 전체매출 33조4439억원 중 영업이익은 4조9900억원으로 14.9%의 이익률을 나타내고 있음
-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업의 매출액 중 영업이익률이 40.8%로 가장 높은 이익률을 나타내고 있고 경기 및 오락서비스업이 15.9%로 조사됨
- 운동 및 경기용품제조업의 경우 영업이익률이 상대적으로 낮고 타 제조업에 비해 수출경쟁력도 떨어져 전반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함
- 운동 및 경기용품제조업의 경우 브랜드, 품질 등 몇 가지 문제점을 인식하고 경쟁력 향상을 통한 해외시장 개척이 시급함

<표 III-17> 사업종류별 영업이익률

(단위 : 십억원, %)

구분	매출액 (A)	영업비용	영업이익 (B)	이익률
				(A)/(B)
운동 및 경기용품제조업	4,600	4,215	385	8.4
경기 및 오락스포츠업	23,137	19,118	3,702	15.9
운동 및 경기용품 유통 및 임대업	4,873	4,305	567	11.6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833	493	340	40.8

그림 . III-12 사업종류별 영업 이익률



5. 인력충원 및 사업체 경영전망

5.1 조직형태별 인력충원 현황

- 조직형태별 인력충원 현황은 상용종사자를 기준으로 2009년도에 7천5백명으로 나타났으며, 2010년도는 8% 증가한 8천백명을 충원한 것으로 조사됨.
- 개인사업체의 경우 2010년도 전년대비 33% 증가한 2천4백명을 충원한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높은 충원율을 나타냈으며, 이는 개인사업체의 경기상황이 호전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음
- 회사법인은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회사이외법인의 경우 인력충원이 2010년 전년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표 Ⅲ-18>조직형태별 인력충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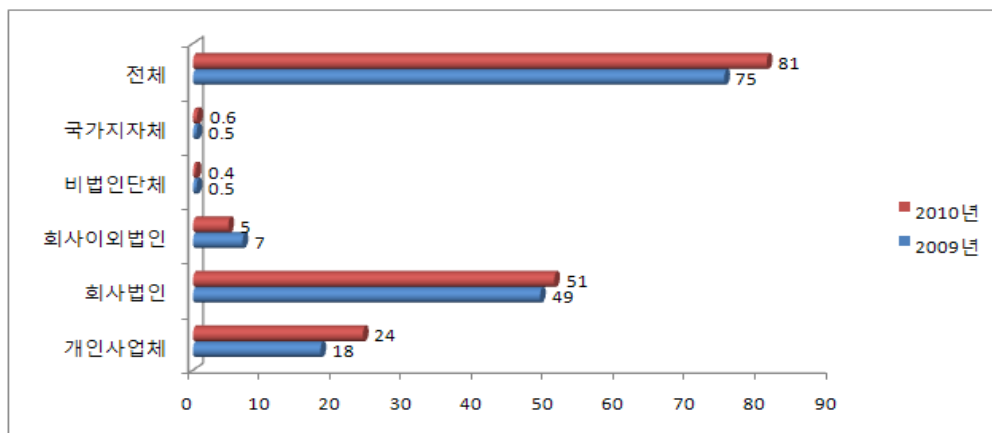
(단위 : 백명, %)

구 분		인력충원*	
		2009년	2010년
합 계		75	81
조직형태	개인사업체	18	24
	회사법인	49	51
	회사이외법인	7	5
	비법인단체	0.5	0.4
	국가·지자체	0.5	0.6

*인력충원 : 해당년도에 신규 또는 보충된 상용종사자의 수(퇴직자 결원 보충 포함)

그림 . Ⅲ-13 조직형태별 인력충원

(단위 : 백명)



5.2 사업종류별 인력충원 현황

- 사업종류별 인력충원 현황은 상용종사자를 기준으로 2009년도에 7천5백명으로 나타났으며, 2010년도는 8% 증가한 8천백명을 충원한 것으로 조사됨.
- 각 사업별로 소폭의 증가가 나타나 사업전반에 걸쳐 경기상황을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을 예상

<표 III-19> 사업종류별 인력충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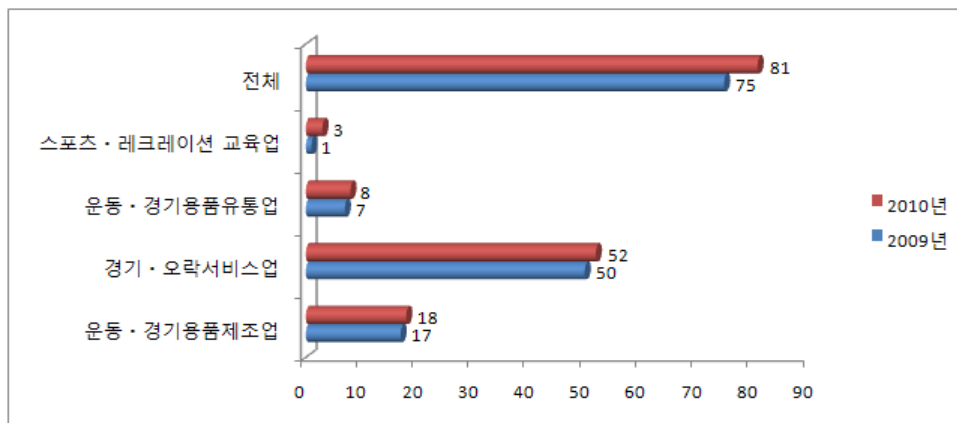
(단위 : 백명, %)

구 분		인력충원*	
		2009년	2010년
합 계		75	81
사업종류	운동 및 경기용품제조업	17	18
	경기 및 오락스포츠업	50	52
	운동 및 경기용품 유통 및 임대업	7	8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1	3

*인력충원 : 해당년도에 신규 또는 보충된 상용종사자의 수(퇴직자 결원 보충 포함)

그림 . III-14 사업종류별 인력충원

(단위 : 백명)



5.3 조직형태별 경기전망

- 조직형태별 경기전망을 살펴보면 2009년에 1.2% 증가하였고, 2010년 3.2% 증가하여 전년대비 경기전망을 낙관하고 있다고 예상
- 이는 스포츠산업의 경우 전체적으로 예년에 비해 경기가 호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개인사업체의 경우에는 2009년 -4.4%, 2010년 -3.1%로 여전히 경기하락을 예상하고 있음

- 다만, 회사법인의 경우 상대적으로 매우 낙관적인 경기전망을 2009년도에 이어 2010년도에도 예상하고 있음
- 특히 국가 및 지자체의 경우 2009년에 비해 2010년도에 매우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개인사업자와 확연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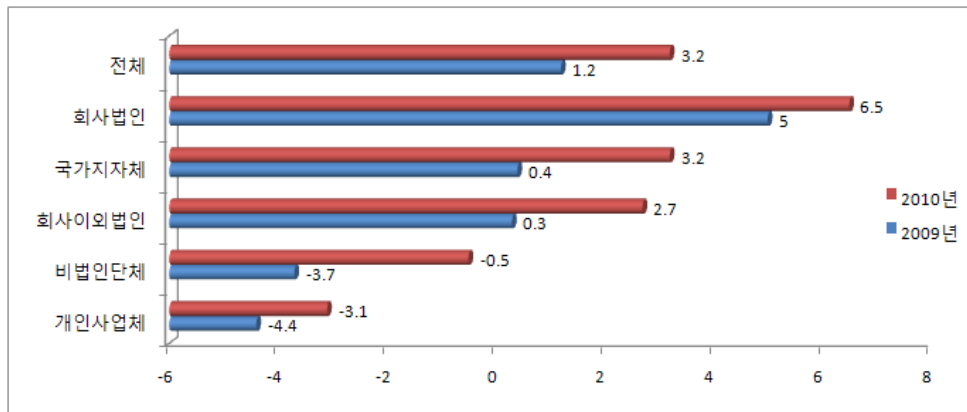
<표 Ⅲ-20> 조직형태별 경기전망

(단위 : %)

구 분		사업체 경기전망	
		2009년	2010년
합 계		1.2	3.2
조직형태	개인사업체	-4.4	-3.1
	회사법인	5.0	6.5
	회사외법인	0.3	2.7
	비법인단체	-3.7	-0.5
	국가지자체	0.4	3.2

그림 . Ⅲ-15 조직형태별 경기전망

(단위 : %)



5.4 사업종류별 경기전망

□ 사업종류별 경기전망을 살펴보면 2009년에 1.2% 증가하였고, 2010년 3.2% 증가하여 전년대비 경기전망을 낙관하고 있다고 예상.

- 특히 제조업분야인 운동 및 경기용품제조업의 경우 2009년에 6.8%에 이어 2010년도에 9.4%의 높은 성장을 예상하고 있어 경기상황의 호전을 낙관하고 있음
- 경기 및 오락서비스업 역시 2010년도에 2.0%의 상승을 전망하고 있어 어느 정도 성장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이는 상대적으로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서비스업종의 성장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 된다면 스포츠산업 전반에 성장을 촉진시키는 계기를 만들 수 있음

- 또한 경기 및 오락서비스업은 스포츠산업에서 매출, 종사자 등 중추적 산업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 경기부양을 위한 정책도 수반되어야 함
- 반면,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업의 경우 2009년도에 경기침체를 전망했지만 점차 좋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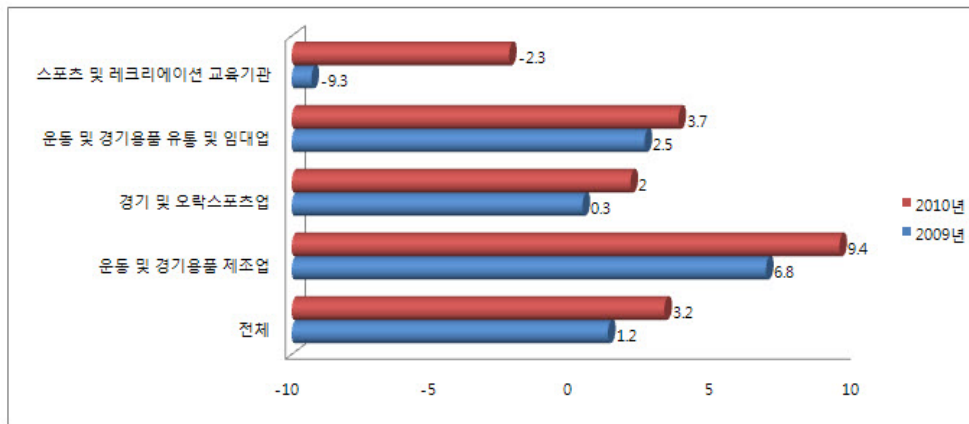
<표 Ⅲ-21> 사업종류별 경기전망

(단위 : %)

구 분		사업체 경기전망	
		2009년	2010년
합 계		1.2	3.2
사업종류	운동 및 경기용품제조업	6.8	9.4
	경기 및 오락스포츠업	0.3	2.0
	운동 및 경기용품 유통 및 임대업	2.5	3.7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9.3	-2.3

그림 . Ⅲ-16 사업종류별 경기전망

(단위 : %)



6. 특성항목

6.1 운동 및 경기 용품 내수 및 수입액 현황

- 운동 및 경기 용품제조업의 내수판매 매출은 3조9,030억으로 비중이 82.1%를 차지하여 내수판매 위주의 산업으로 확인할 수 있음.
- 각 품목별 비중을 살펴보면 스포츠의류의 내수(매출) 비중이 49.6%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이는 2008년 기준조사에서도 스포츠의류 내수(매출) 비중이 53%를 차지하여 지속적으로 경쟁력 있는 상품을 제조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기타의 경우 내수비중이 32.7%를 차지하고 있지만 수입의 경우 79.8%에 이르고 있음. 이는 스키, 골프, 낚시, 캠핑용 장비, 자전거 등의 브랜드 선호도가 높은 제품일수록 수입에 의존하는 경향이 두드러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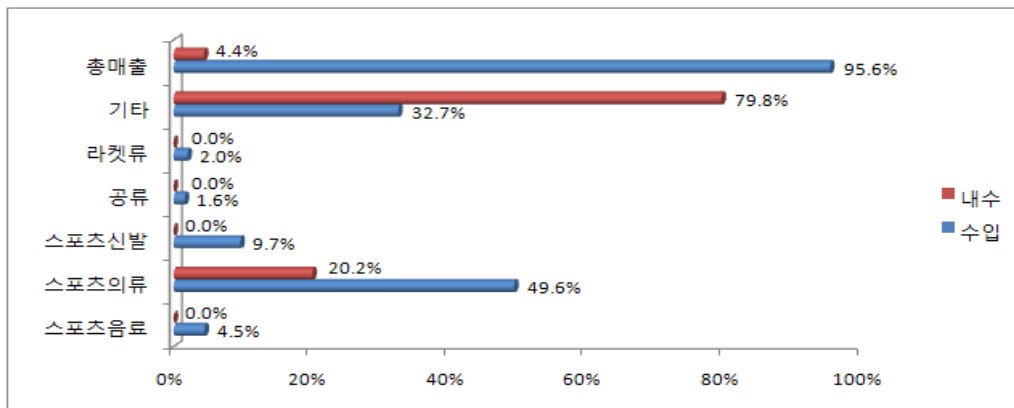
<표 Ⅲ-22> 운동·경기용품제조업 상품별 구성비

(단위 : 십억원, %)

구 분	금액	비 중						
		스포츠음료	스포츠의류	스포츠신발	공 류	라켓류	기타	
운동·경기 용품제조업	내수	3,903	4.5	49.6	9.7	1.6	2.0	32.7
	수입	182	0.0	20.2	0.0	0.0	0.0	79.8

그림 . Ⅲ-17 운동·경기용품제조업 상품별 구성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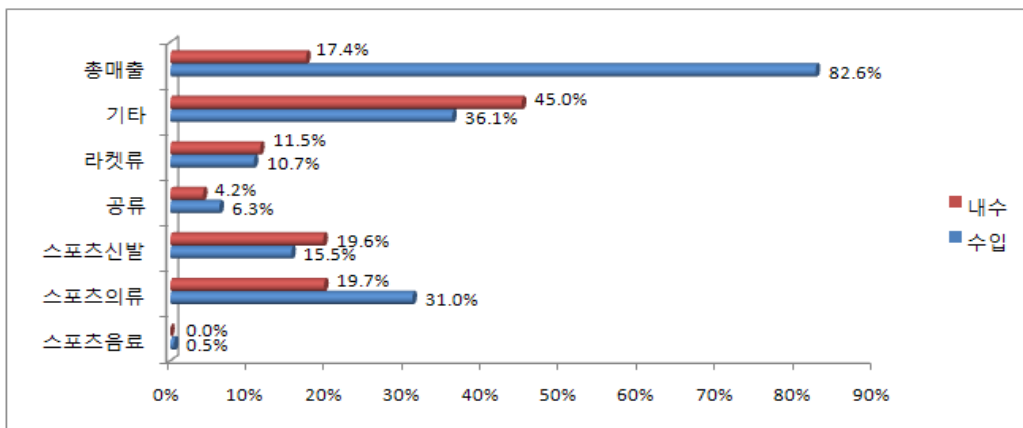


- 운동 및 경기 용품유통업의 내수판매 매출은 4조6,990억으로 비중이 96.3%를 차지하여 운동경기 용품제조업과 같이 내수판매 위주의 산업
- 각 품목별 비중을 살펴보면 스포츠의류의 내수(매출) 비중이 31.0%로 높게 나타났음. 다만 기타 품목(스키, 골프, 낚시, 캠핑용 장비, 자전거 등)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수입 비중을 살펴보면 기타 품목(스키, 골프, 낚시, 캠핑용 장비, 자전거 등)의 비중이 확연히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 스포츠신발의 수입비중이 높은 것은 신발류가 브랜드 가치에 소비자들이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국내 스포츠신발의 브랜드 선호도가 그 만큼 낮다는 것을 보여줌

<표 Ⅲ-23> 운동 및 경기용품유통업 상품별 구성비 (단위 : 십억원, %)

구분	금액	비중						
		스포츠음료	스포츠의류	스포츠신발	공류	라켓류	기타	
운동경기	내수	4,699	0.5	31.0	15.5	6.3	10.7	36.1
용품유통업	수입	986	0.0	19.7	19.6	4.2	11.5	45.0

그림 . Ⅲ-18 운동경기용품유통업 상품별 구성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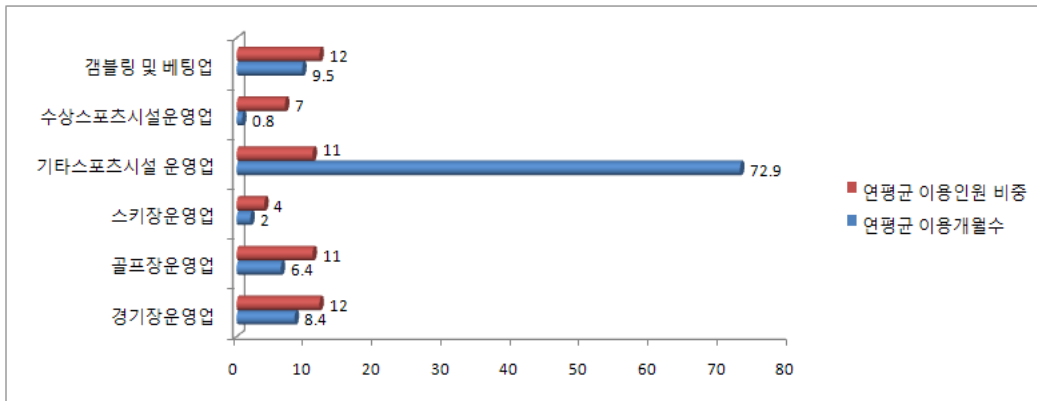
6.2 경기 및 오락스포츠서비스업 연간 영업개월 및 이용인원

- 경기 및 오락스포츠서비스업의 평균 영업 개월 수는 연간 10개월로 나타났으며, 연간 이용인원수는 4억4,872만명으로 조사됨
- 종합스포츠시설수영장당구장 등 기타스포츠시설 이용 인원이 3억2,689만명으로 가장 많았고 캠블링 및 베틱업을 이용한 인원도 4천266만명으로 나타남

<표 Ⅲ-24> 경기 및 오락스포츠 서비스업 연간 영업개월 수 및 이용인원

구 분	평균 영업개월수(월)	연간이용인원수(명)	비중(%)
합 계	10	448,724,981	100.0
경기장 운영업	12	37,825,140	8.4
골프장 운영업	11	28,690,806	6.4
스키장 운영업	4	8,924,027	2.0
기타스포츠시설 운영업	11	326,899,819	72.9
수상스포츠시설 운영업	7	3,717,175	0.8
갬블링 및 베팅업	12	42,668,014	9.5

그림 . Ⅲ-19 경기 및 오락스포츠 서비스업 연간 영업개월수 및 이용인원 (단위 : 개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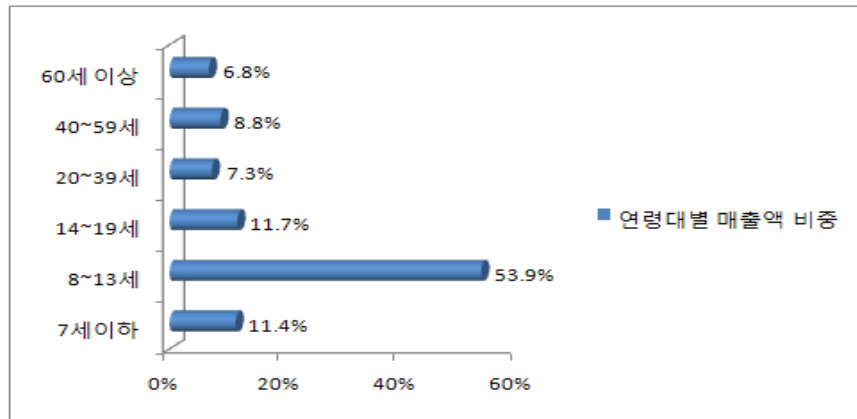
6.3 스포츠산업 교육서비스업 고객유형별 매출액 구성비

- 스포츠산업 교육서비스업의 경우 8~13세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서비스업의 매출이 전체 53.9%를 차지함
- 태권도, 수영 등 유아체육의 활성화에 따른 결과로 판단되며 그 외 연령대 매출은 6~12% 사이로 조사됨
- 이는 스포츠산업 교육서비스업이 청소년, 성인을 위한 프로그램, 콘텐츠 등이 부족하여 8~13세 연령대에 매출이 집중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다양한 교육서비스 콘텐츠를 개발 제공하므로 각 연령대별 잠재수요를 확대할 필요성

<표 Ⅲ-25> 고객유형별 매출액 비중

고객유형	7세 이하	8~13세	14~9세	20~39세	40~59세	60세 이상
100.0%	11.4%	53.9%	11.7%	7.3%	8.8%	6.8%

그림 . Ⅲ-20 고객유형별 매출액 비중



7. 스포츠산업 현안 실태조사 결과

7.1 전체 스포츠산업 현안 실태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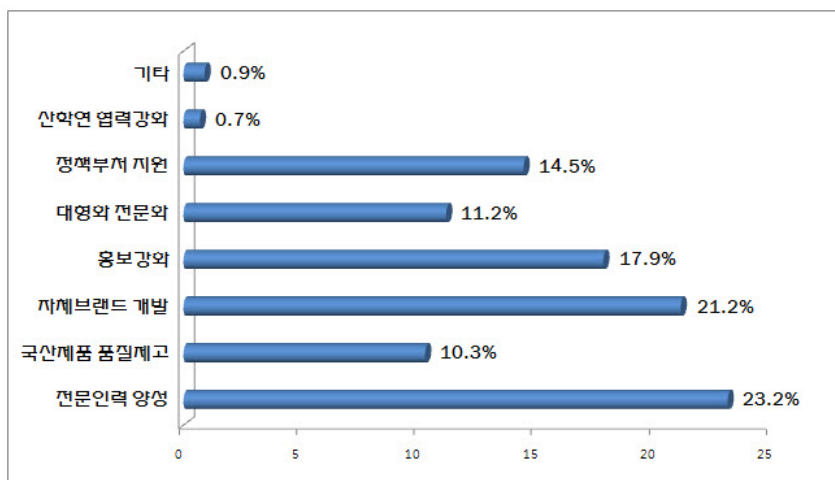
- 스포츠산업의 현안을 파악하기 위하여 대외경쟁력 강화, 육성·발전 장애요인, 육성·발전 지원 부문, 매출증대 방안 등 4가지로 분류하여 조사함
- 대외경쟁력 강화부문의 경우 전문인력 양성이 시급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23.2%로 가장 높게 나타남. 이는 스포츠산업이 융·복합산업으로 전환되면서 스포츠관련 외교, 행정, 경영 등의 전문인력 수급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IT 등 복합적인 산업에서 전문종사자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현실
- 또한 자체브랜드 개발이 대외경쟁력 강화부문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순위로 나타남. 이는 스포츠용품 등 제조업 분야에 브랜드가치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외 메이저브랜드와의 경쟁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체브랜드의 개발과 그에 따른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표 Ⅲ-26> 대외경쟁력 강화부문

(단위 : %)

	전문인력 양성	국산제품 품질제고	자체브랜 드개발	홍보 강화	대형화 전문화	정책부처 지원	산학연 협력강화	기타
대외경쟁력 강화부문	23.2	10.3	21.2	17.9	11.2	14.5	0.7	0.9

그림 . Ⅲ-21 스포츠산업 대외경쟁력 강화 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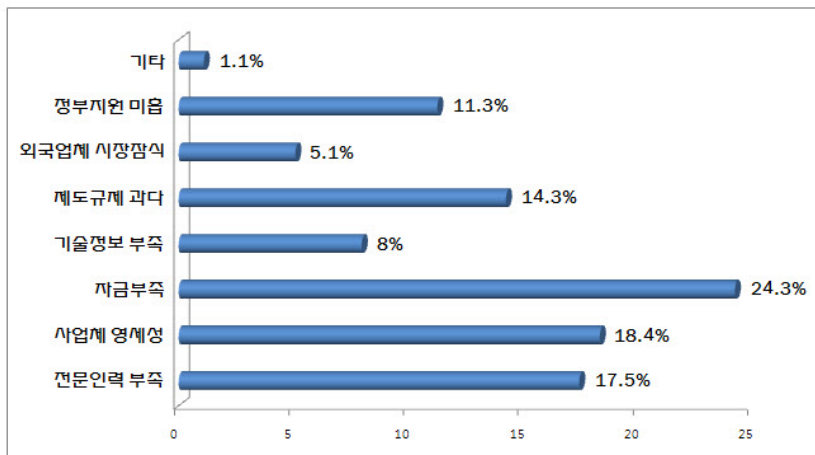
- 육성·발전 장애요인의 경우 자금부족이 24.3%로 가장 높게 나타남. 이는 스포츠산업이 신생산업이면서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한 상황에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예상됨
- 또한 장애요인으로 사업체의 영세성을 꼽고 있는데 4인이하 사업체수가 전체 6만2천여개 중 5만6천여 개에 이르러 90%가 영세업체로 구성되어 있어 스포츠산업의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음
- 그 밖에 전문인력 부족이 17.5%, 제도규제 과다 14.3%로 나타남

<표 III-27> 육성발전 장애요인

(단위 : %)

	전문인력 부족	사업체 영세성	자금부족	기술정보 부족	제도규제 과다	외국업체 시장잠식	정부지원 미흡	기타
육성발전 장애요인	17.5	18.4	24.3	8	14.3	5.1	11.3	1.1

그림 . III-22 스포츠산업 육성발전 장애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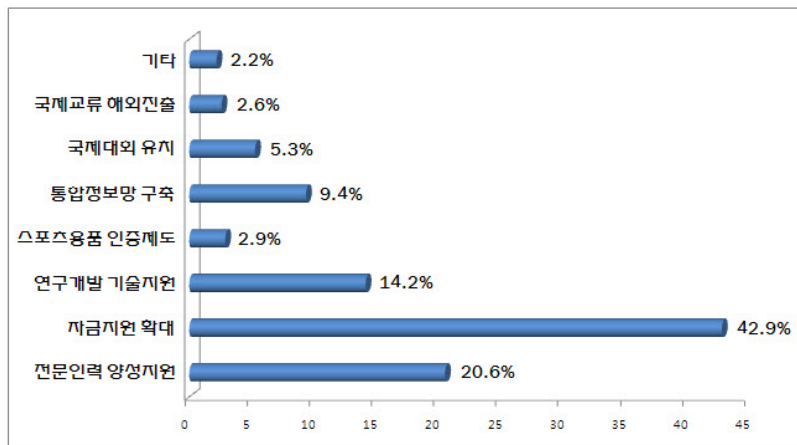
- 육성·발전 지원부문에서는 정부의 자금지원확대를 가장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정부의 지원정책이 점차 범위를 확대하면서 지속적으로 행해지곤 있지만 스포츠산업 특성상 영세한 업체가 워낙 넓은 범위와 다양한 업종으로 존재하여 하위 업종별 구분을 통하여 정책과 전략이 수립돼야 할 필요성
- 연구개발 기술지원 부문 역시 정부예산 증액과 지원범위의 확장이 필요함

<표 Ⅲ-28> 육성발전 지원부문

(단위 : %)

	전문인력 양성지원	자금지원 확대	연구개발 기술지원	스포츠용품 인증제도	통합정보 망구축	국제대회 유치	국제교류 해외진출	기타
육성발전 지원부문	20.6	42.9	14.2	2.9	9.4	5.3	2.6	2.2

그림 . Ⅲ-23 스포츠산업 육성발전 지원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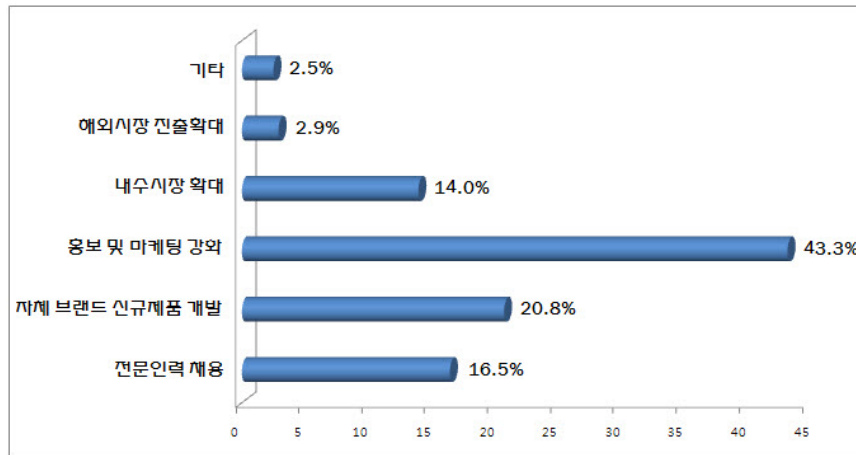
- 매출 증대방안으로는 홍보 및 마케팅 강화 응답이 43.3%로 가장 높게 나타남. 이는 영세 업체의 자금문제와 같은 맥락으로 풀이되며 정부 지원정책에 있어서 감안해야할 중요사항으로 판단됨
- 최근 외국산 용품에 대한 국내 용품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체브랜드 개발뿐만 아니라 브랜드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과 품질제고를 통한 신규제품 개발에 필요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판단됨

<표 Ⅲ-29> 매출 증대방안

(단위 : %)

	전문인력 채용	자체브랜드신 규제품 개발	홍보 및 마케팅 강화	내수시장 확대	해외시장 진출확대	기 타
매출 증대방안	16.5	20.8	43.3	14.0	2.9	2.5

그림 . Ⅲ-24 스포츠산업 매출증대방안



7.2 사업종류별 현안 실태분석

□ 스포츠산업의 현안을 파악하기 위하여 대외경쟁력 강화, 육성·발전 장애요인, 육성·발전 지원 부문, 매출증대 방안 등 4가지로 분류하여 각 사업종류별로 구분하여 분석함

○ 대외경쟁력 강화부문에서 스포츠용품제조업의 경우 자체브랜드 개발이 27.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경기오락서비스업의 경우 전문인력 양성이 23.7%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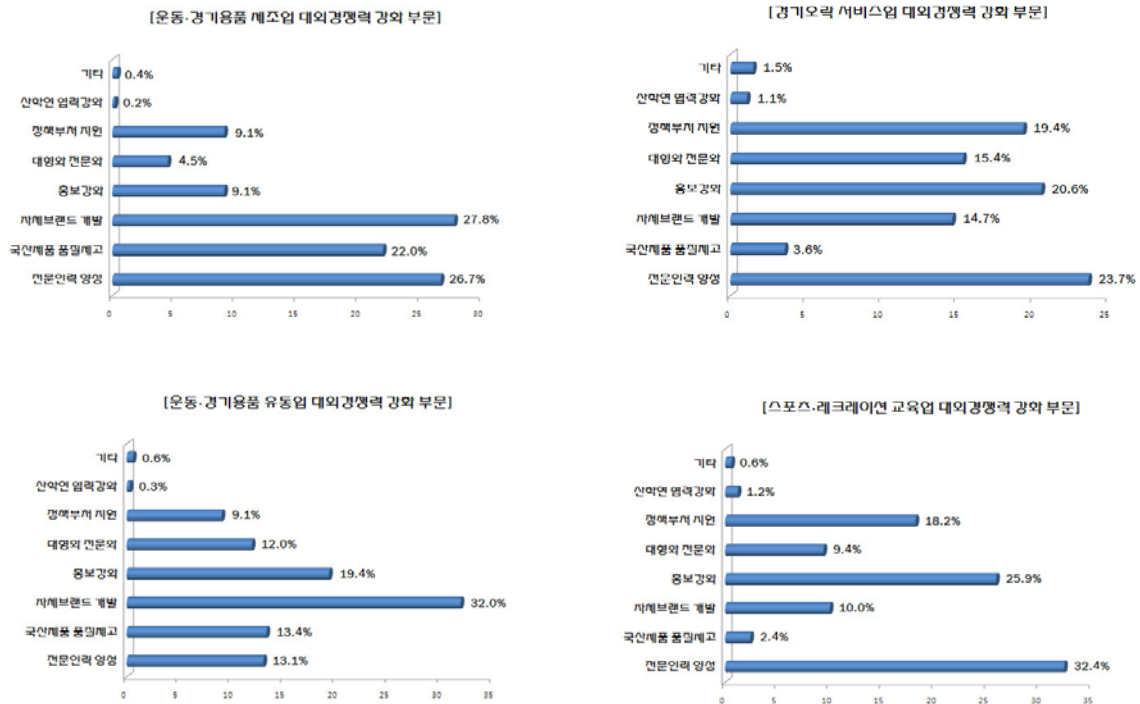
○ 또한, 운동 및 경기용품 유통업의 경우 제조업과 같이 자체브랜드 개발이 32.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스포츠교육서비스업의 경우 전문인력양성이 32.4%로 나타나 가장 시급한 경쟁력 강화 부문으로 응답하였음

<표 Ⅲ-30> 사업종류별 대외경쟁력 강화부문

(단위 : %)

부문	사업	전문인력 양성	국산제품 품질제고	자체브랜드 개발	홍보 강화	대형화 전문화	정책부처 지원	산학연 협력강화	기타
대외경쟁력 강화부문	스포츠용품제조업	26.7	22.0	27.8	9.1	4.5	9.1	0.2	0.4
	경기오락서비스업	23.7	3.6	14.7	20.6	15.4	19.4	1.1	1.5
	운동경기용품유통업	13.1	13.4	32.0	19.4	12.0	9.1	0.3	0.6
	스포츠교육서비스업	32.4	2.4	10.0	25.9	9.4	18.2	1.2	0.6

그림 . Ⅲ-25 사업종류별 대외경쟁력 강화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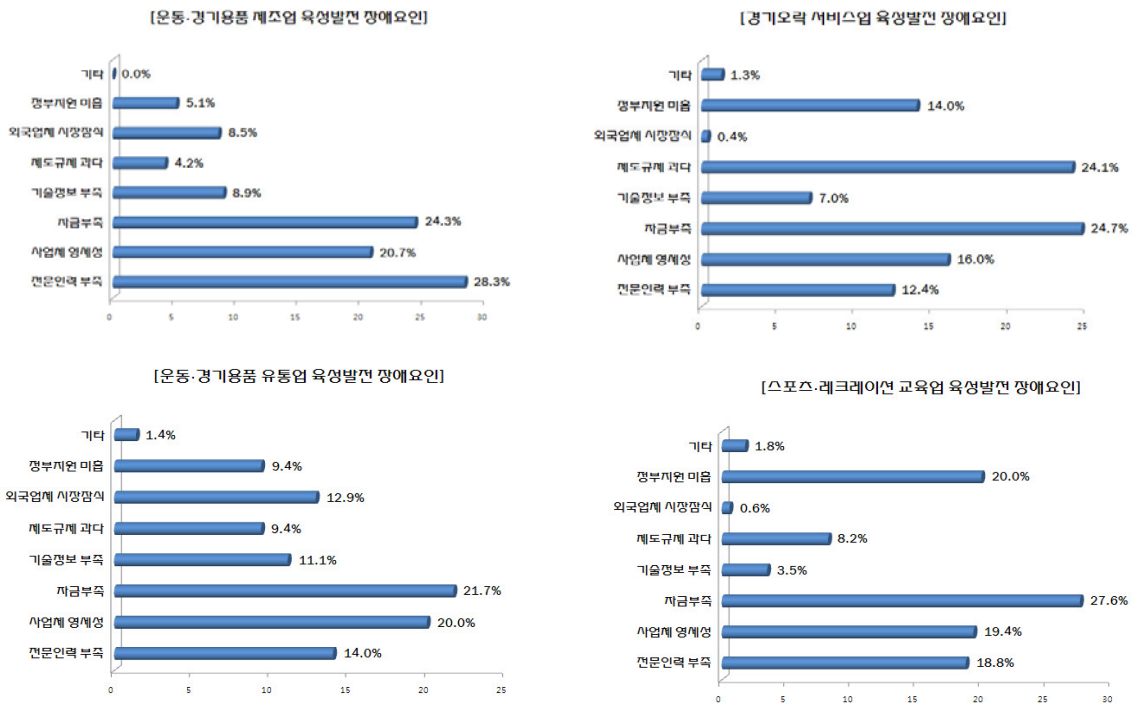
- 사업종류별 육성·발전 장애요인을 살펴보면 스포츠용품제조업의 경우 전문인력 부족 응답이 28.3%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또한, 자금부족이 24.3%, 사업체 영세성이 20.7%로 인력수급, 자금 등 운영상 필수적인 자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경기오락서비스업의 경우 제도규제 과다 응답이 24.1%로 자금부족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응답을 보였는데 이는 타 사업종류에 비해 과다한 제도규제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Ⅲ-31> 사업종류별 육성발전 장애요인

(단위 : %)

부문	사업	전문인력 부족	사업체 영세성	자금부족	기술정보 부족	제도규제 과다	외국업체 시장잠식	정부지원 미흡	기타
육성발전 장애요인	스포츠용품제조업	28.3	20.7	24.3	8.9	4.2	8.5	5.1	0.0
	경기오락서비스업	12.4	16.0	24.7	7.0	24.1	0.4	14.0	1.3
	운동경기용품유통업	14.0	20.0	21.7	11.1	9.4	12.9	9.4	1.4
	스포츠교육서비스업	18.8	19.4	27.6	3.5	8.2	0.6	20.0	1.8

그림 . Ⅲ-26 사업종류별 육성발전 장애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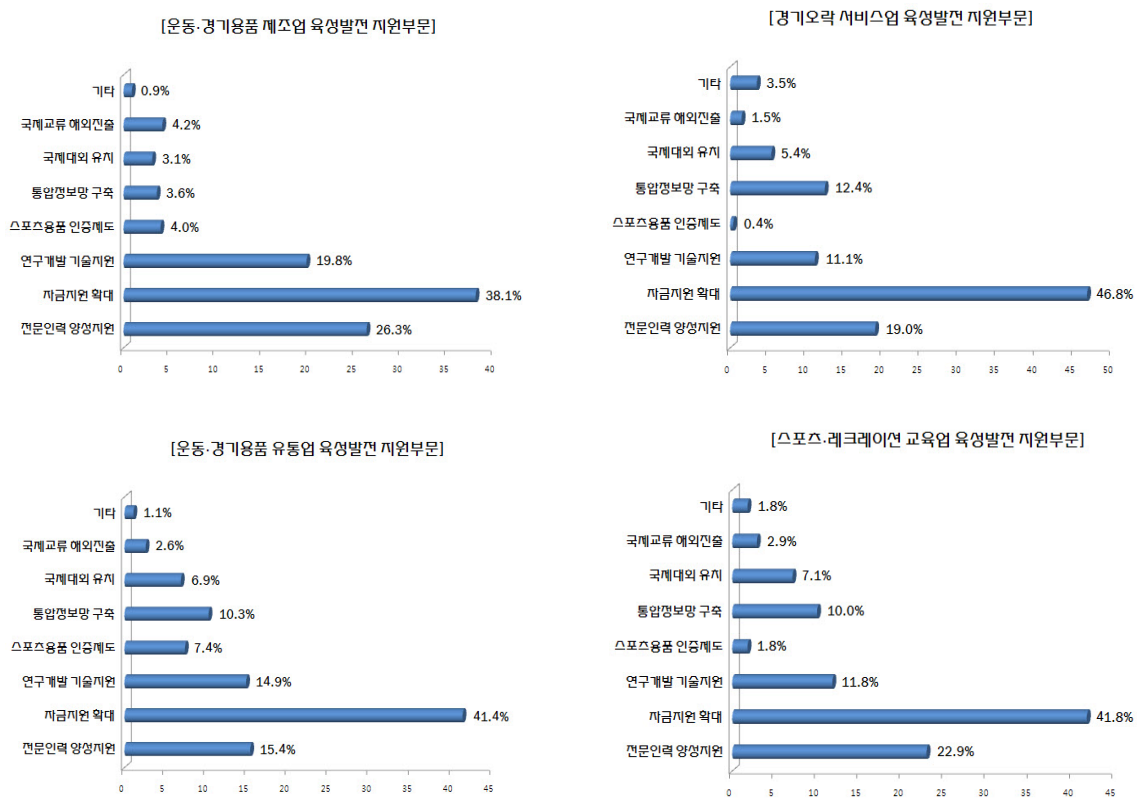
- 각 사업종류별 육성·발전 지원부문에서 스포츠용품제조업의 경우 자금지원 확대가 38.1%로 가장 높게 조사됨. 이는 정부가 스포츠용품 제조업분야의 기술개발지원, 해외수출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시장전반에 지원범위가 보장되는 것은 정책적 한계가 있다고 판단됨
- 또한 각 사업종류별로 정부의 자금지원 확대를 육성·발전 방향에 가장 필요한 부문이라고 응답하고 있는데 이는 정부가 서비스업종까지 지원정책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 스포츠용품인증제도는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스포츠용품제조업과 유통업의 응답이 10%미만으로 나타난 결과를 고려해봐야 함. 이는 홍보부족, 필요성 상실, 관심부족 등의 이유를 분석해 볼 여지가 있는 결과를 보여줌

<표 Ⅲ-32> 사업종류별 육성발전 지원부문

(단위 : %)

부문	사업	전문인력 양성지원	자금지원 확대	연구개발 기술지원	스포츠용품 인증제도	통합정보 망구축	국제대회 유치	국제교류 해외진출	기타
육성발전 지원부문	스포츠용품제조업	26.3	38.1	19.8	4.0	3.6	3.1	4.2	0.9
	경기오락서비스업	19.0	46.8	11.1	0.4	12.4	5.4	1.5	3.5
	운동경기용품유통업	15.4	41.4	14.9	7.4	10.3	6.9	2.6	1.1
	스포츠교육서비스업	22.9	41.8	11.8	1.8	10.0	7.1	2.9	1.8

그림 . Ⅲ-27 사업종류별 육성발전 지원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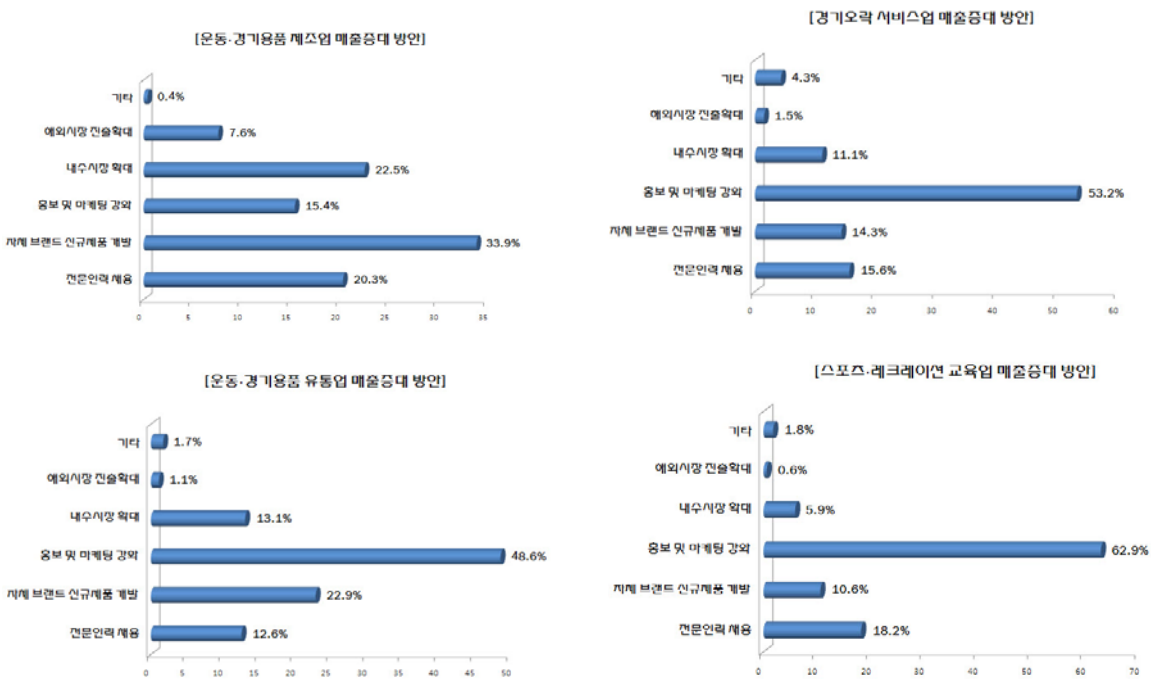
- 각 사업종류별 매출 증대 방안의 응답결과는 스포츠용품제조업의 경우 자체브랜드 및 신규제품 개발이 33.9%로 가장 높았으며, 경기오락서비스업과 스포츠교육서비스업은 각각 53.2%와 62.9%로 홍보 및 마케팅 강화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음
- 제조업을 제외한 서비스, 유통업 등은 홍보와 마케팅 강화를 매출 증대에 핵심적인 필요 전략으로 응답하고 있는데 정부도 일방적인 자금지원뿐만 아니라 서비스, 유통 분야에 관한 통합적 홍보 전략과 마케팅에 관한 지원정책도 고려해야 함

<표 III-33> 사업종류별 매출증대 방안

(단위 : %)

부문	사업	전문인력 채용	자체브랜드 신규제품 개발	홍보 및 마케팅 강화	내수시장 확대	해외시장 진출확대	기타
매출증대 방안	스포츠용품제조업	20.3	33.9	15.4	22.5	7.6	0.4
	경기오락서비스업	15.6	14.3	53.2	11.1	1.5	4.3
	운동경기용품유통업	12.6	22.9	48.6	13.1	1.1	1.7
	스포츠교육서비스업	18.2	10.6	62.9	5.9	0.6	1.8

그림 . III-28 사업종류별 매출증대 방안



8. 성과 및 제언

8.1 성과

- 스포츠산업관련 통계의 최초 국가승인통계 지정 확보
 - 통계법 제18조 1항 및 제20조에 의해 승인된 일반통계(승인번호 제11321호)

- 스포츠산업 통계체계 네트워크 구축
 - 2009년 기준조사는 통계청 통계대행과의 협조로 통계 작성 및 관리에 체계를 구축
 - 표준지침(스포츠산업실태조사 조사지침서 등)을 마련하여 조사과정, 조사원교육, 통계청 지방분소와 연계, 자료처리 등 전반적인 조사체계 구축
 - 스포츠산업 통계의 유통을 위한 온라인 체계 구축(www.spobiz.kr)
 - 조사시기는 매년 통계청 사업체기초조사 후 7월에 실시

- 모집단 자료 활용
 - 2009년 기준 전국사업체조사의 결과 중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산업특수분류」 중 스포츠 산업분류에 해당하는 사업체를 모집단의 기초로 조사를 실시하여 통계신뢰도 확보에 기여함

- 현장조사
 - 조사대상 표본수가 전국으로 산재되고 업무량(표본수)이 적어 전국 통계청 분소에서 직접 조사에 참여하여 효율성 확보
 - 마사회, 경륜장 등 지사(점)별 실적 파악이 어려운 경우 본부(기업체)에서 일괄 조사로 조사의 정도 및 효율성 제고

- 조사표
 - 단조로운 설문 조사표를 가능한 구체화하여 통계조사 결과에 대한 양적, 질적 분석 확대
 - 조직형태(개인사업체, 회사법인, 회사이외법인, 국가지방자치단체)
 - 종사자수(상용, 임시·일용,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기타종사자)
 - 인력 충원계획, 연간 급여액, 사업실적, 특성항목, 설문문항 등 추가

□ 조사결과 내검 및 자료처리

- 사전 조사자료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조사결과 내검 및 철저한 집계처리로 통계정확성 제고
 - 1차로 조사항목간 관련사항 점검 후 조사된 연간통계자료와 비교·검토하여 보완
 - 행정자료(국세청)와 비교·검토를 통한 정확성 제고

8.2 제언

□ 표본명부

- 스포츠산업 산업분류 모집단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조사결과를 통하여 모집단을 추정함으로써 사업체수, 사업실적, 종사자 등 시장규모의 추정에 있어 다소간 차이 발생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모집단 정비 필요
- 이를 바탕으로 표본을 추출하여 조사의 정확성 확보가 필요
- 2009년 기준조사에서 추출한 표본수(1711개)를 확대하여 권역별, 하위항목별 총량추정이 가능하도록 설계

□ 스포츠산업 특수분류의 재분류

- 스포츠산업의 정의, 범위, 분류기준 개발
 - 스포츠산업분류의 명확한 재설정이 필요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와 스포츠산업분류가 일치하지 않은 세세분류는 스포츠산업 세분류 정의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음
- 한국표준산업분류 내 특수분류(스포츠산업)는 2010년 3월 일부 하위분류를 추가한 것을 제외하면 2000년에 개편한 산업분류를 사용하고 있는 현실
 - 한국표준산업분류는 50여개의 법안 등과 맞물려 있어 통계청 일정 이외의 추가 개편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임
- 스포츠산업 분류체계 정립문제는 통계청, 관련부처, 유관기관 등과 협의하여 수정·보완 작업 필요

[IV]

부록

1. 스포츠산업 특수분류
2. 한국표준산업분류 설명
3. 스포츠산업 관련 용어 정의
4. 조사표와 결산서 관계
5. 조사표



【부록 1】 스포츠산업 특수분류

대분류	중분류	중분류명	세분류	KSIC	산업분류명	품목명	
1. 운동 및 경기용품 제조업	1-1	기타 비알콜음료 제조업	1-1-1	11209	기타 비알콜음료 제조업	스포츠음료(알카리성 이온음료)	
			1-2-1	13224	천막 및 기타 캔버스 제품 제조업	캠핑용 직물제품	
	1-2	섬유제품 및 의복 제조업	1-2-2	13229	기타 직물제품 제조업	구멍자켓, 구멍벨트	
			1-2-3	14191	셔츠 및 체육복 제조업	스포츠의류 제조	
			1-2-4	14199	그외기타 봉제의복 제조업	스포츠의류 부분품	
			1-3-1	15129	가방 및 기타 보호용 케이스 제조업	등산용 배낭	
	1-3	가방 및 신발 제조업	1-3-2	15219	기타 신발 제조업	경기용 및 특수용 신발 제조	
			1-3-3	15220	신발부분품 제조업	경기용 운동화 부분품	
			1-4-1	25200	무기 및 총포탄 제조업	수렵용 공기총, 경기용 총포탄	
	1-4	운동 및 경기용구 제조업	1-4-2	31120	오락 및 스포츠용 보트 건조업	범선, 요트, 카누, 카약	
			1-4-3	31991	자전거 및 환자용 차량 제조업	스포츠용 자전거, 자전거 부품	
			1-4-4	33301	체조, 육상 및 체력단련용 장비 제조업		
			1-4-5	33302	놀이터용 장비 제조업		
			1-4-6	33303	낚시 및 수렵용구 제조업		
			1-4-7	33309	기타 운동 및 경기용구 제조업		
			1-4-8	33409	기타 오락용품 제조업	볼링용구, 당구용구	
			1-4-9	33999	그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제품 제조업	회전목마, 기타 흥행장용품	
	2. 경기 및 오락 스포츠업	2-1	경기장 운영업	2-1-1	91111	실내경기장 운영업	
				2-1-2	91112	실외경기장 운영업	
2-1-3				91113	경주장 운영업		
2-2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2-2-1	91191	스포츠 클럽 운영업		
			2-2-2	91199	그외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2-3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2-3-1	91121	골프장 운영업		
			2-3-2	91122	스키장 운영업		
2-4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2-4-1	91131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		
			2-4-2	91132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2-4-3	91133	수영장 운영업		
			2-4-4	91134	볼링장 운영업		
			2-4-5	91135	당구장 운영업		
			2-4-6	91136	골프연습장 운영업		
			2-4-7	91139	그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2-4-8		91291	무도장 운영업	무도장			
2-4-9		91292	체육공원 및 유사 공원 운영업	체육공원 운영			
2-5		수상스포츠시설 운영업	2-5-1	91231	낚시장 운영업		
			2-5-2	91239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	수상스포츠 시설 운영	
2-6		캠블링 및 베틱업	2-6-1	91241	복권발행 및 판매업	스포츠토도	
			2-6-2	91249	기타 캠블링 및 베틱업	경마. 경륜. 경쟁 관련 베틱시설	
2-9	기타 경기 및 오락스포츠업	2-9-1	73901	매니저업	스포츠인 매니저		
3. 운동 및 경기용품 유통임대업	3-1	운동 및 경기용품 도매업	3-1-1	46464	운동 및 경기용품 도매업		
			3-1-2	46465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도매업	스포츠용 자전거 및 부품 도매	
	3-2	운동, 경기용품 및 자전거 소매업	3-2-1	47631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3-2-2	47632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스포츠용 자전거 소매	
	3-3	스포츠 및 레크레이션 용품 임대업	3-3-1	69210	스포츠 및 레크레이션 용품 임대업		
4. 스포츠 및 레이레이션 교육기관	4-1	스포츠 및 레이레이션 교육기관	4-1-1	85611	스포츠 교육기관		
			4-1-2	85612	레크레이션 교육기관	댄스교습	

【부록 2】 한국표준산업분류 설명 - 스포츠산업분류 부문

1. [운동 및 경기용품 제조업]

1-1 기타 비알콜음료 제조업

분류코드 11209 기타 비알콜음료 제조업

물에 설탕, 감미료 또는 향미료를 첨가한 음료를 생산하거나, 과실주스, 과실추출물 또는 기타 합성추출물을 첨가하여 청량음료 또는 기타 비알콜성 음료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이 포함된다. 이들 제품에는 우유, 구연산 등의 첨가여부를 불문하며 천연광수 및 천연탄산수를 생산하여 병에 포장하는 산업활동도 여기에 포함된다.

〈예 시〉

- 강장음료 제조
- 곡물음료 제조
- 가당음료 생산
- 인삼드링크 제조
- 캔커피(음료) 제조
- 캔커피 및 캔차류 제조
- 스포츠음료 제조

〈제 외〉

-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거 음료를 단순히 포장하는 활동(75994)
- 천연 생수를 생산·포장하는 산업활동(11202)

〈색인어〉 캔커피(음료)제조, 가당음료수제조, 가향탄산음료제조, 감주제조, 강장음료제조, 건강음료제조, 곡분음료제조, 과실음료제조(희석된것), 과실주스제조(희석음료), 과실향음료제조, 과즙음료제조(희석음료), 광수생산, 광천수제조, 구근제음료제조, 넥타제조(음료)

1-2 섬유제품 및 의복 제조업

분류코드 13224 천막 및 기타 캔버스 제품 제조업

타포린 직물 또는 캔버스 직물로 천막, 캠핑용 텐트, 차량용·기계용·가구용의 겹덮개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 차양 제조
- 캠핑용 직물제품 제조
- 구명대 제조
- 압축공기식 매트리스 제조
- 돛 제조

〈제 외〉

- 구명자켓 및 구명벨트 제조(13229)

〈색인어〉 차광막제조, 캐노피천막제조, 파라솔제조(섬유제), 걸뿔개제조(캔버스제품),
 구멍대제조(캔버스제품), 기계커버제조(캔버스제품), 덮개제조(캔버스제품), 돛제조,
 매트리스제조(압축공기식), 범포제품제조(배낭 우편낭 가방제외),
 압축공기식매트리스제조(캔버스제품), 야영용직물제품제조(텐트등캔버스제품),
 자동차용덮개제조(캔버스제품), 자동차용커버제조(캔버스제품), 차양제조(캔버스제품)

분류코드 13229 기타 직물제품 제조업

기타 직물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 먼지 털이개 제조(직물제)
- 직물제 마스크 제조
- 낙하산 제조
- 구명자켓 제조
- 드레스 패턴 제조
- 텐트 제조
- 세탁보 제조
- 깃발 제조
- 구명벨트 제조
- 신발류 끈 제조
- 페넨트 제조

〈제 외〉

- 구멍대 및 캔버스제품 제조(13224)

〈색인어〉 안경달이 수건제조, 토시제조(직물), 패턴제조(의류), 거즈마스크제조(방직용섬유제),
 걸레제조(직물제), 관절지지용직물제품제조, 구명벨트제조(안전벨트포함), 구명재킷제조,
 국기제조(직물제), 근육지지용직물제품제조, 기(旗)제조, 깃발제조(직물제),
 나이론제보자기제조, 낙하산제조, 냅킨제조(섬유제)

분류코드 14191 셔츠 및 체육복 제조업

남녀용 셔츠, 블라우스 및 체육복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가죽 및 모피의복은 제외하나 가죽 또는 모피로 장식한 것은 포함된다.

〈예 시〉

- 블라우스 제조
- 체육복 제조

〈색인어〉 등산복제조, 경기복제조, 남자수영복제조, 남자용셔츠제조, 브라우스제조, 블라우스제조,
 셔츠브라우스제조, 셔츠제조(남녀용), 수영복제조(남녀용), 스키복제조(기성복), 스키슈트제조,
 여자수영복제조, 옷제조(셔츠및체육복 ; 편조의복제외), 와이셔츠제조,
 운동복제조(편조의복제외)

분류코드 14199 그외 기타 봉제의복 제조업

특수 의복 및 의복 부분품의 제조활동이 포함된다.

〈예 시〉

- 잠수복 제조
- 우의 및 방수복 제조

- 방사선 예방보호복 제조
- 의류부분품 제조
- 특수환자용 의복 제조
- 가운류(종교의식복, 학사복 등) 제조

〈색인어〉 수의제조, 무대의상제조, 방탄복제조, 가운제조(종교의식복 학사복 법복등), 교통안전용야광복 제조, 레인코트제조, 방사선보호복제조(고무제제외), 방수복제조, 방열복제조(고무제제외), 상복제조, 소방용방열복제조, 승복제조, 우비제조(의복), 우의제조, 의류부분품제조

1-3 가방 및 신발 제조업

분류코드 15129 가방 및 기타 보호용 케이스 제조업

가방, 각종 기구 및 용품의 보호용 케이스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제품은 목재 또는 금속 등의 보강재료를 사용할 수도 있다.

〈예 시〉

- 트렁크 제조
- 등산용 배낭류 제조
- 공구백 제조
- 안경 케이스 제조
- 사진기 케이스 제조
- 악기 케이스 제조
- 골프 가방 제조

〈제 외〉

- 개인 휴대용품용 지갑류 및 유사케이스 제조(15121)

〈색인어〉 가방제조(종이제제외 핸드백제외), 가죽가방제조(핸드백제외), 가죽제백제조(핸드백제외), 가죽제서류가방제조, 가죽제케이스제조(지갑및핸드백제외), 가죽제품제조(가방및보호용케이스), 가죽케이스제조(핸드백및지갑제외), 공구백제조(플라스틱봉투 종이가방제외), 광학기구용케이스제조(플라스틱봉투 종이가방제외), 권총케이스제조, 금속보강여행용가방제조, 나이론제가방제조, 날붙이가죽케이스제조, 등산용가방제조, 등산용배낭제조

분류코드 15219 기타 신발 제조업

구두류를 제외한 운동용 신발, 특수용 신발, 경기용 신발 및 방수용 신발, 각종 재료제의 가정용 슬리퍼, 각반 및 발이나 다리의 일부 또는 전체를 싸도록 만들어진 기타 제품(양말 제외)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이 포함된다.

〈예 시〉

- 경기용 신발 제조
- 운동화 제조
- 나무 및 고무 신발 제조
- 플라스틱 신발 제조
- 발레용 신발 제조
- 각반 제조
- 짚신 제조
- 특수 목적용 신발 제조

〈제 외〉

- 신발용 부분품(재단품) 제조(15220)

〈색인어〉 종이신발제조, 군화제조(전투화), 나막신제조, 나무신발제조, 농구화제조, 등산화제조, 목제신발제조, 발레용신발제조, 방수신발제조, 비닐제샌들제조, 비닐제슬리퍼제조, 비닐제신발제조, 비치샌들제조, 샌들제조(비정장용), 소가족제신발제조(구두류제외)

분류코드 15220 신발부분품 제조업

각종 재료로 신발 제조용 재단제품 및 부속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고무 또는 플라스틱을 성형하여 신발부분품을 제조하는 경우도 여기에 포함된다.

〈예 시〉

- 신발 갑피 제조
- 안창 제조(신발용)
- 축구화 밑창 제조
- 뒷굽 제조(신발용)
- 바깥바닥 제조(신발용)
- 야구화 밑창 제조

〈색인어〉 가죽신발재료제조, 갑피제조(신발용), 구두힐제조(플라스틱제), 뒷굽제조(신발용), 밑창제조(신발용), 소가족제신발갑피제조, 신발갑피제조, 신발뒷굽제조, 신발밑창제조, 신발바깥바닥제조, 신발부분품제조, 신발부속품제조, 신발외창제조, 신발용가죽지지물제조, 신발용보강재제조

1-4 운동 및 경기용구 제조업

분류코드 25200 무기 및 총포탄 제조업

로켓트발사기, 소형화기 및 중화기와 총탄, 포탄, 폭탄 등 군사용 및 경찰용의 각종 무기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수렵용 및 경기용의 총포탄을 제조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예 시〉

- 폭탄 제조
- 비군사 무기 제조
- 가스총 제조
- 수렵용 무기 제조
- 총탄 제조
- 공기총 제조
- 경기용 무기 제조

〈제 외〉

- 폭발점화장치, 뇌관, 불꽃제품 및 화약 제조(20494)
- 탱크, 전차 제조(31910)
- 대륙간 탄도미사일 제조(31310)
- 단검 제조(25931)

〈색인어〉 경찰봉제조, 무기제조, 가스권총제조, 가스총부분품제조, 가스총제조, 격발자제조(무기용), 경기용라이플제조(총), 경기용무기제조, 경기용산탄총제조, 공기총제조, 공기총탄환제조, 군용연발권총제조, 군용화기제조(소총 대포 곡사포), 권총제조, 기관총제조

분류코드 31120 오락 및 스포츠용 보트 건조업

모터, 풍력, 페달, 노에 의하여 추진될 수 있는 카누, 범선, 요트 및 이와 유사한 보트를 건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노로 추진되는 소형 범선 및 구명정 등의 건조도 포함된다.

〈예 시〉

- 유람용 보트 제조(노용)
- 경기용 선박 제조
- 운동용 선박 제조
- 카약 제조
- 커터 제조
- 낚시용 보트 제조

〈제 외〉

- 선체가 오락용 보트와 유사하더라도 상업적 서비스용으로 특별히 설계 제작된 보트 제조(3111)

〈색인어〉 스포츠용보트건조, 강화플라스틱제요트제조(FRP), 경기용보트건조, 경기용선박제조, 낚시용보트제조, 모터보트제조(오락및경기용), 범선건조, 보트건조(오락및경기용), 보트제조(오락용), 선박제조(오락및경기용), 소용범선건조, 아웃보드모터보트제조, 오락용보트건조, 요트건조, 유람용보트제조(노용)

분류코드 31991 자전거 및 환자용 차량 제조업

한개 이상의 바퀴가 장착된 각종 비동력 자전거 및 환자용 차량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 배달용 삼륜 자전거 제조
- 신체장애자용 운송장비 제조
- 이륜자전거 및 기타 자전거 제조(원동기가 장착되지 않은)
- 환자용 운송장비 제조(동력식 또는 비동력식)

〈제 외〉

- 보조 원동기가 장착된 자전거 및 자전거용 사이드카 제조(31920)
- 어린이용 삼륜자전거 제조(3340)

〈색인어〉 환자용차량제조, 보행카 제조(노인용), 실버카제조(노인용), 유모차부품제조, 유모차제조, 경기용자전거제조, 경주용싸이클제조, 곡예용자전거제조, 기어제조(자전거용), 기어크랭크제조(자전거용), 방향지시기제조(자전거용), 배달용삼륜자전거제조, 백파이프제조(자전거부품), 브레이크와이어제조(자전거용), 브레이크제조(자전거용)

분류코드 33301 체조, 육상 및 체력단련용 장비 제조업

체조용 장비, 트랙 및 육상경기 용구, 복싱용 링, 배구 및 농구장 설치장비, 장비체력단련용 기계장치 등과 같은 장비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 헬스 장비 제조
- 체조용품 제조
- 체조용 링 제조
- 클라이밍 로프 제조

- 바렐 제조
- 스프링보드 제조

〈제 외〉

- 어린이 놀이터용 장비 제조(33302)
- 복싱 글러브 및 보호물 제조(33309)

〈색인어〉 체력단련용장비제조, 배구대 제조, 축구골대 제조, 스트레칭기구 제조, 야외헬스기구 제조, 역기 제조, 덤벨 제조, 훌라후프 제조, 트럼폴린제조(체력단련용), 스프링보드제조, 아령제조, 육상경기용품제조, 육상용장비제조, 줄넘기제조, 철봉제조(운동용구)

분류코드 33302 놀이터용 장비 제조업

놀이터에 설치되는 놀이용 장비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으로서 특정 산업에 분류되지 않은 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 시소 제조
- 미끄럼틀 제조
- 회전 그네 제조
- 놀이대 제조

〈제 외〉

- 다른 산업에서 분류되는 놀이터용 제품은 제외

〈색인어〉 그네제조(놀이터용), 놀이기구제조(놀이터용), 놀이대제조, 놀이터용장비제조, 미끄럼틀제조, 시소제조(놀이터용), 어린이놀이시설제조, 어린이놀이터용장비제조, 파고라제조(놀이터용), 회전그네제조, 회전탑제조

분류코드 33303 낚시 및 수렵용구 제조업

낚시 및 수렵용 장비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 낚시장비 제조
- 조류 유인용구 제조
- 인조미끼 제조
- 수렵용구 제조
- 낚시용 망 제조
- 포충망 제조

〈제 외〉

- 양궁장비 제조(33309)
- 어망 제조(13922)
- 수렵 및 경기용 총포탄 제조(2520)
- 골프장비(공, 글러브 제외) 제조(33309)

〈색인어〉 낚시용고기망제조, 경기용네트제조, 낚시방울 제조, 낚시대손잡이 제조, 뜰채(낚시용) 제조, 강화플라스틱제낚시용구제조, 낚시대제조, 낚시릴제조, 낚시미끼제조(인조미끼),

낚시바늘제조, 낚시봉제조, 낚시용릴제조, 낚시용망제조, 낚시용부찌제조, 낚시용인조미끼제조

분류코드 33309 기타 운동 및 경기용구 제조업

코트 및 필드 게임용구, 등산장비, 동계경기용 장비, 수중경기용 장비, 펜싱용구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이 포함된다.

〈예 시〉

- 펜싱용구 제조
- 탁구용 기구 제조
- 장갑류 제조(경기용)
- 양궁장비 제조
- 골프글러브 제조
- 라켓 제조
- 공 제조(각종 경기용)
- 설상 스키 제조
- 배트 및 스틱류 제조
- 골프장비 제조

〈제 외〉

- 체조, 육상 및 체력단련용 장비 제조(33301)
- 낚시 및 수렵용구 제조(33303)
- 볼링 및 당구용 장비(볼 포함) 제조(33409)

〈색인어〉 서바이벌용품 제조, 등산용삼 제조, 야구배트 제조, 야구방망이 제조, 오리발 제조, 인라인스케이트 제조, 족도 제조, 쌍절곤 제조, 동계경기용장비제조, 등산용지팡이제조, 등산용철물제조, 등산장비제조(등산화 등산용배낭제외), 라켓제조, 로온테니스공제조, 로온테니스라켓제조

분류코드 33409 기타 오락용품 제조업

판 게임용 장비, 스포츠오락용 기계, 당구, 볼링 등 오락용 테이블 및 장비, 도박게임장비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이 포함된다.

〈예 시〉

- 바둑 및 장기 제조
- 스포츠오락용 기계 제조
- 유희용구 제조
- 유희용 카드 제조
- 당구용구 제조
- 카지노게임용 테이블 제조
- 체스 제조
- 도박게임장비 제조
- 오락용 테이블 및 장비 제조
- 실내게임용 기계기구 제조
- 테이블 게임용 기계기구 제조
- 볼링용구 및 관련 장치물 제조

〈제 외〉

- 축제, 카니발 또는 크리스마스장식용품(전기 제외) 제조(33999)

〈색인어〉 미니당구대 제조, 장기알 제조, 성인오락실빠징코 제조, 바둑알 제조, 당구용구제조, 도박게임장비제조(영상게임기제외), 레인제조(보울링용구), 바둑제조, 볼링공제조,

볼링볼제조(오락용품), 볼링용구제조, 볼링용볼제조, 볼링장치제조, 볼링핀제조,
스포츠오락용기계제조

분류코드 33999 그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제품 제조업

회전목마 및 기타 흥행장용품, 소도구 및 화장품품, 마네킹 및 활동적인 진열물, 회전낙하장치(팔랑개비 등), 머리빗 및 머리핀, 리놀륨 및 유사 경표면 마루덮개 및 기타 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이 포함된다. 다른 산업에서 분류되지 않은 개인 안전보호장비는 이곳에 분류한다.

〈예 시〉

- 흥행장용품 제조
- 유희장 용품 제조
- 빗, 헤어슬라이드 제조
- 수동식 체 및 어레미 제조
- 마네킹인형 제조
- 커얼링핀 제조
- 젤라틴제 이쑤시게 제조
- 회전낙하장치(팔랑개비 등) 제조
- 커얼링크립 제조
- 화장용 분첩, 패드 및 분무기 제조
- 축제, 카니발, 크리스마스장식용품(전기 제외) 제조

〈제 외〉

- 귀금속제 머리핀 제조(33110)
- 크리스마스 장식용 조명세트 제조(28423)

〈색인어〉 인조손톱 제조, 크리스마스트리장식 제조, 버퍼(손톱손질용) 제조, 수족관제조(아크릴), 비너제조(귀금속 보석제제외), 비닐제깔개제조, 비닐제카펫제조(덮개), 빗제조(귀금속제제외), 수동식어레미제조(체), 수동식체제조, 어레미제조(체), 여과용기제조, 이쑤시게제조(젤라틴제), 자동인형제조, 정수통제조

2. [경기 및 오락스포츠업]

2-1 경기장 운영업

분류코드 91111 실내 경기장 운영업

농구, 배구, 권투, 레슬링, 유도, 태권도, 씨름, 수영 등의 경기를 위한 관람석이 있는 실내 경기장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색인어〉 수영장운영(관람석 있는 실내경기장), 실내체육관운영(관람석갖춘), 빙상장운영(관람석갖춘), 권투경기장운영(실내 ; 관람석갖춘), 농구경기장운영(실내 ; 관람석갖춘), 레슬링경기장운영(실내 ; 관람석갖춘), 배구경기장운영(실내 ; 관람석갖춘), 배드민턴경기장운영(실내 ; 관람석갖춘), 수구경기장운영(실내 ; 관람석갖춘), 수영경기장운영(실내 ; 관람석을갖춘), 실내경기장운영(관람석갖춘), 실내농구장운영(관람석갖춘), 씨름경기장운영(실내 ; 관람석갖춘),

유도경기장운영(실내 ; 관람석갖춘), 태권도경기장(실내 ; 관람석갖춘)

분류코드 91112 실외 경기장 운영업

육상경기, 축구, 야구, 럭비, 하키 등 각종 필드경기를 위한 관람석이 있는 실외 경기장을 운영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

〈색인어〉 풋살경기장운영(실외 ; 관람석갖춘), 풋살축구장운영(실외 ; 관람석갖춘), 종합운동장(실외 ; 관람석갖춘), 럭비경기장운영(실외 ; 관람석갖춘), 실외경기장운영(실외 ; 관람석갖춘), 야구장운영(실외 ; 관람석갖춘), 야외경기장(실외 ; 관람석갖춘), 운동장운영(실외 ; 관람석갖춘), 육상경기장운영(실외 ; 관람석갖춘), 축구경기장(실외 ; 관람석갖춘), 프로야구장운영(실외 ; 관람석갖춘), 필드경기장(실외 ; 관람석갖춘), 하키경기장(실외 ; 관람석갖춘)

분류코드 91113 경주장 운영업

경마, 자동차, 사이클, 동물 등이 경기할 수 있는 관람석이 있는 경주장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 경륜장
- 경마장
- 자동차 경주장
- 투우장

〈제 외〉

- 경기장과 독립된 마권 발행소(91249)

〈색인어〉 경주마사육관리(경마장에서), 경륜경기장운영, 경륜장운영, 경마장관리사무소, 경마장운영, 경주장운영(경마 경륜등), 과천경마장운영, 동물경기장운영, 모터사이클경주장운영, 싸이클경기장운영, 오토바이경기장운영, 자동차경주장운영, 자전거경주장운영, 제주경마장운영, 투견장운영

2-2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분류코드 91191 스포츠 클럽 운영업

프로 및 실업 경기단체 등과 같이 스포츠 활동에 참가할 기회를 제공해주는 스포츠클럽을 운영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 여기에는 게임단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이 포함된다.

〈예 시〉

- 프로야구단
- 동계스포츠 클럽
- 체스 클럽
- 프로게임단
- 프로축구단
- 실업경기단체
- 사격 클럽

〈제 외〉

- 단순 친목의 운동 동호회 활동(94990)

〈색인어〉 스포츠클럽운영(프로야구단등), 이중격투기프로팀, 경기단체운영, 경륜(싸이클)경기단운영, 경마단운영, 농구단운영, 럭비단운영, 마라톤선수단운영, 배구단운영, 수영선수단운영, 실업경기단운영, 실업경기단체운영, 싸이클경기단운영, 씨름선수단운영, 아마추어농구단운영

분류코드 91199 그외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이 산업에는 독립된 운동선수, 프로게이머, 경마 및 경주차 소유주, 코치, 스포츠 행사 기획자, 경기후원 단체, 스포츠 연맹 및 규제 단체 활동, 경마 및 경주건의 훈련활동 등이 포함된다.

〈제 외〉

- 개인교사, 지도자에 의한 스포츠 지도(85611)

〈색인어〉 스포츠지도자 협회, 단증발급(스포츠) 단체, 경기지원단체, 당구연맹, 합기도연맹, 봅슬레이연맹, 싸이클연맹, 스쿼시연맹, 역도연맹, 감독(운동관련 ; 자영), 개사육훈련장, 개훈련소, 경기기록계원(자영), 경기인(자영), 경기프로모터

2-3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분류코드 91121 골프장 운영업

골프코스 및 기타 관련 설비를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 사업체는 본질적인 산업활동을 수행하면서 부수적으로 관련 장비임대 및 강습을 수행할 수 있다.

〈제 외〉

- 골프연습장(91136)

〈색인어〉 골프장운영(숙박시설과독립된), 골프코스 운영(연습장제외), 골프장운영(골프연습장제외)

분류코드 91122 스키장 운영업

숙박시설과 독립된 스키장 및 스키리프트를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 사업체는 본질적인 산업활동을 수행하면서 부수적으로 스키강습 및 장비임대 등을 할 수 있다.

〈제 외〉

- 눈썰매장(91139)
- 숙박시설과 결합된 스키장(55)

〈색인어〉 스키장운영(숙박시설 없는)

2-4 기타 스포츠 운영업

분류코드 91131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

동일 건물내에서 복합적인 오락운동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 종합 체육시설
- 복합 체육시설

〈색인어〉 종합스포츠시설운영, 건강생활체육관운영, 육체미도장운영, 체력단련도장운영, 체력단련장운영, 체육관운영, 레포츠센터(종합운동시설 ; 경기장제외), 복합운동시설운영(경기장제외), 복합체육시설운영, 스포츠센터운영(종합운동시설 ; 경기장제외), 실내체육관운영(관람석없는), 어린이놀이터운영, 종합운동시설운영(경기장제외), 체육시설운영(종합운동시설 ; 경기장제외)

분류코드 91132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심신을 단련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 헬스클럽

〈제 외〉

- 무도장(91291)
- 교육목적의 체력단련시설 운영(85611)

〈색인어〉 체력단련시설운영, 암벽등반장 운영(체력단련용), 클라이밍클럽운영(체력단련용), 휘트니스센터운영, 휘트니스클럽운영, 성장지원센터(체력단련목적), 주민자치센터(체력단련시설운영), 단전호흡시설운영, 보디빌딩시설운영, 보디빌딩업(체력단련시설), 헬스클럽운영

분류코드 91133 수영장 운영업

관람석이 없는 수영장을 운영하는 사업체의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 관람석이 있는 실내 수영경기장(91111)

〈색인어〉 수영장운영(관람석없는 ; 비경기장)

분류코드 91134 볼링장 운영업

볼링장 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색인어〉 볼링센터운영, 볼링장시설운영, 볼링장운영

분류코드 91135 당구장 운영업

당구장 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색인어〉 당구클럽운영, 빌리어드클럽(당구장)운영, 당구장운영, 포켓볼당구장

분류코드 91136 골프연습장 운영업

골프연습장 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색인어〉 스크린골프연습장, 골프연습장운영

분류코드 91139 그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달리 분류되지 않은 운동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 사업체는 부수적으로 강습 및 관련장비의 임대활동 등을 수행할 수 있다.

〈예 시〉

- | | |
|-----------|---------|
| · 스쿼시장 | · 탁구장 |
| · 테니스장 | · 야구연습장 |
| · 롤러스케이팅장 | · 승마연습장 |
| · 요트장 | · 조정장 |
| | · 카누장 |

〈제 외〉

- 오락용 사격장(91229)

〈색인어〉 풋살장, 게이트볼경기장, 공기총사격장운영(오락용제외), 국궁장운영, 궁도장운영(오락용제외), 눈썰매장운영, 라켓게임경기장운영, 라켓게임용운동설비운영, 롤러스케이팅장운영, 배드민턴장운영(경기장제외), 석궁장운영, 수렵장운영(스포츠), 스쿼시장운영, 승마장운영, 썰매장운영

분류코드 91291 무도장 운영업

주류 및 식사가 제공되지 않는 무도장, 댄스홀 등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 | | |
|-------|-------|
| · 무도장 | · 콜라텍 |
| · 댄스홀 | |

〈제 외〉

- 무도유희주점 및 디스코클럽 운영(5621)
- 교육목적의 댄스교습소 운영(8561)

〈색인어〉 댄스장운영, 댄스홀운영, 무도장운영, 콜라텍(무도장)

분류코드 91292 체육공원 및 유사 공원 운영업

일반대중이 여가생활을 하면서 이용할 수 있는 경기용 코트, 운동장 및 산책로 등을 설치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배양함을 목적으로 조성된 체육공원 및 유사 공원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 체육공원 운영
- 시민공원

〈제 외〉

- 유원지 운영업(91210)
- 자연공원 및 휴양림 운영업(90232)

〈색인어〉 공원관리사무소운영(자연공원제외), 시민공원운영, 공원관리사무소(체육공원 시민공원등), 체육공원관리사무소(체육공원), 근린공원, 시민공원운영(유원지제외), 오락공원관리운영, 체육공원운영

2-5 수상스포츠시설 운영업

분류코드 91231 낚시장 운영업

낚시장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 유료 낚시터 운영
- 실내 낚시장 운영

〈색인어〉 낚시장운영, 낚시터제공, 낚시터운영, 실외낚시장운영(유료), 유료낚시터운영

분류코드 91239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

기타 수상오락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 레저보트용 정박시설 운영업
- 마리나업
- 오락용 낚시배 운영
- 오락용 보트임대(물놀이시설내)
- 해수욕장 운영

〈제 외〉

- 유료 낚시터 운영(91231)

〈색인어〉 스킨스쿠버 다이빙 체험, 레프팅체험제공, 바나나보트운영, 팽공보트운영, 래프팅, 수상스키장, 해수욕장운영, 놀이용보트임대(물놀이시설), 마리나업, 보트임대(물놀이시설), 오락용낚시배운영, 오락용보트임대(저수지등 ; 물놀이시설내), 정박설비임대(승무원없이)

3. [운동 및 경기용품 유통업 및 임대업]

3-1 운동 및 경기용품 도매업

분류코드 46464 운동 및 경기용품 도매업

각종 운동 및 경기용품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 운동장비 도매
- 등산장비 및 용품 도매
- 경기용품 도매
- 등산화 도매

〈색인어〉 래프팅보트도매, 검도용품도매, 런닝머신도매, 헬스자전거도매, 벤치프레스도매, 헬스기구도매, 스노우보드장비도매, 승마용품도매, 인라인도매, 킥보드도매, 태권도용품도매, 하키용품도매, 스케이트도매, 경기용품도매, 골프공도매

분류코드 46465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도매업

자전거 등의 기타 가정용 운송장비를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 자전거 및 부품 도매
- 개인용 운송장비 도매(동력식)

〈색인어〉 바퀴도매(자전거), 휠체어도매(동력식), MTB(자전거)도매, 자전거도매(동력식), 휠체어도매, 리어카도매, 비동력운송장비도매, 사이클도매, 손수레도매, 운송장비도매(비동력식), 자전거도매, 자전거부품도매, 튜브도매(자전거·수레용)

3-2 운동, 경기용품 및 자전거 소매업

분류코드 47631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스포츠 및 경기 용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 등산 장비(텐트 포함) 소매
- 펜싱, 검도 장비 소매
- 헬스기구 소매
- 코트 및 필드게임 장비 소매

〈제 외〉

- 낚시장비 소매(47640)

〈색인어〉 스노우보드장비소매, 아이스하키장비소매, 인라인스케이트소매, 훌라우프소매,

가정용골프네트소매, 건강기구소매(체력단련기), 검도용품소매, 검도장비소매, 경기용품소매, 골프장비소매, 공(볼)소매, 구기용볼소매, 궁도용품소매, 글러브소매(경기용), 동계스포츠장비소매

분류코드 47632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자전거 등 기타 개인용 운송장비를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자전거 소매와 수리를 병행하는 경우에는 포함된다.

〈예 시〉

- 자전거 및 자전거 부품 소매
- 개인용 운송장비 소매(비동력식)

〈제 외〉

-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소매(45)

〈색인어〉 개인용운송장비소매(비동력식), 리어카소매, 사이클소매, 손수레소매, 운송장비소매(개인용 ; 동력식제외), 자전거부품소매, 자전거소매, 자전거용품소매

3-3 스포츠 및 레크레이션 용품 임대업

분류코드 69210 스포츠 및 레크레이션 용품 임대업

각종의 운동, 여가 및 유희용품을 임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 스키 임대
- 장난감 임대
- 자전거 임대
- 물놀이기구 임대
- 카누 임대

〈제 외〉

- 오락산업에 종사하는 사업체에서 그 산업활동에 관련하여 오락용품을 임대하는 경우는 91의 적합한 항목에 분류
- 물놀이시설에서의 물놀이기구 임대(91239)

〈색인어〉 스포츠용품임대, 레크레이션용품임대, 스쿠버장비임대, 스노우보드임대, 게임기대여(오락용품), 경기용장비임대, 경기용품임대, 놀이게임기대여, 놀이용보트임대(물놀이시설제외), 물놀이기구임대(물놀이시설제외), 보트임대(놀이용 ; 물놀이시설에서의대여제외), 스키화임대, 여가용기기임대, 여가용품임대, 오락용기기임대

【부록 3】 스포츠산업 관련 용의 정의

○ 스포츠산업

스포츠 산업이란 스포츠를 기업활동의 수익대상으로 바라보고 스포츠와 관련된 재화와 서비스의 창출하는 일체의 생산활동

○ 스포츠음료

스포츠음료는 스포츠 현장에서 적절한 수분 공급 및 에너지원의 부분적 재보충을 목적으로 하여 제조된 당분과 전해질 등이 포함된 기능성 음료

〈예 시〉

- 포카리스웨트(동아오츠카) · 게토레이(한국펩시콜라)
- 파워에이드(한국코카콜라) · 스포트라이트(광종)
- 파워 오투(농심)

○ 캠핑용 식물제품

캠핑용 식물제품은 캠핑에 사용되는 텐트, 로프와 같은 직기에 걸쳐 짠 물건으로 면직물, 모직물, 견직물 등의 제품

〈예 시〉

- 텐트(코베아, 콜맨 등) · 침낭(네파, 카벨라스) · 로프

○ 구멍 자켓, 구멍 벨트

구멍 자켓과 구멍 벨트는 수상용 인명구조용을 목적으로 부력재 또는 co2 gas를 사용하여 제작된 제품

〈예 시〉

- 구멍조끼(버팔로) · 구멍벨트(씨울프)

○ 스포츠의류 제조

스포츠 의류 제조란 스포츠 활동을 목적으로 하거나 스포츠 종목의 특성인 기능적, 활동적, 심리적, 사회문화적 특성을 고려하여 생산되는 의류제품

〈예 시〉

- 르까프 · 프로스펙스 · 휠라

○ 스포츠의류 부분품

스포츠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스포츠 의류 제조에 필요한 부품

〈예 시〉

- 한길섬유 · 고어텍스 · COLDBACK · SILFINE

○ 등산용 배낭

등산에 사용되는 물건을 넣어서 등에 질 수 있도록 형질이나 가죽 따위로 만든 가방

<예 시>

· 콜롬비아 · K2 · 코오롱 · MILLET

○ 경기용 및 특수용 신발 제조

경기용 및 특수한 종목을 목적으로 개발된 신발의 제조

<예 시>

· 육상 스파이크 · 발레슈즈 · 농구화 · 테니스화

○ 경기용 운동화 부분품

경기를 하는 목적으로 제작된 운동화의 부품

<예 시>

· 축구화 밑창(파라마스 회사)

○ 수렵용 공기총, 경기용 총포탄

수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으며, 압축 공기의 힘을 이용하여 탄알이 발사되도록 만든 총, 경기용 총포탄은 경기에 사용되는 총포의 탄환

<예 시>

· 공기총(덕일, 신성산업) · 총포탄((주)풍산)

○ 범선, 요트, 카누, 카약

범선은 바람을 이용한 선박으로 돛단배 또는 돛배라고 불리우며,

- 요트는 배안에 세워진 돛대와 고물(뒷부분)에 달린 키를 조정하면서 바람을 이용하여 나아가는 선박
- 카누는 선수·선미가 뺏족하고 1개 이상의 노로 움직이는 경량의 소형 선박으로 정의
- 카약은 좌석에 앉아 발을 앞으로 하고 노를 좌우로 번갈아 저어 빠르기를 겨루는 카누 경기

<예 시>

· 범선,요트(베스트마린, 코오롱마린(구매, 대여업) 등)
· 카누, 카약(콜맨, K2 등)

○ 무도장

입장료 등을 받고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를 할 수 있는 장소

<예 시>

· 스타 무도장 · 천호 무도장 · 을지 무도장

○ 체육공원 운영

도시공원법에 의한 도시공원의 세분 중 하나로 주로 운동경기나 야외활동 등 체육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배양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을 운영

〈예 시〉

· 올림픽 공원 · 금정 체육공원 · 한강공원

○ 스포츠투토

대중스포츠를 대상으로 경기결과를 예측 투표하여 경기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환급금을 교부하는 스포츠레저 게임(축구, 농구, 야구, 골프 등)

〈예 시〉

· 스포츠투토 · 스포츠 프로토

○ 스포츠인 매니저

스포츠인 매니저는 선수의 입단, 연봉, 인도스먼트(광고, 협찬, 라이선싱, 출판 등), 미디어관계 관리를 큰 축으로하여 선수의 훈련지원, 재무관리, 문제해결 법적자문에 이르는 모든 보조적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을 지칭

〈예 시〉

· IB스포츠 · 세마스스포츠마케팅

○ 스포츠용 자전거

견고하고 전문산악용으로 달릴 수 있도록 설계된 MTB를 포함하여 일반온로드 위주로 달리면서도 MTB처럼 스포츠틱한 디자인과 구성을 가진 자전거(싸이클, 자전거모기용 BMX 등)

〈예 시〉

· 삼천리 · 코렉스 · 알톤

○ 댄스교습

시간과 공간 속에 존재하는 육체의 율동적인 예술 활동을 교습(밸리댄스, 탭댄스, 포크댄스, 사교댄스, 힙합댄스 등)

〈예 시〉

· DFA Academy · 슈퍼브댄스 스튜디오

【부록 4】 조사표와 결산서의 관계

〈도소매업〉

(단위 : 백만원)

과 목	금 액		조사표 항목	비 고
I.매출액		1,234	⑨항 (1) 매출액	
1.총매출액	1,234			
상품매출액	1,000			
기타영업수익	234			
II.매출원가		740	⑨항 (2)영업비용 가.매출원가	
1.기초상품매출액	45			
2.당기상품매출액	735			
3.기말상품매출액	40			
III.매출총이익		494		
IV.판매비와 관리비		380	⑨항 (2)영업비용 나.판매비와 관리비	
1.급여	200			
2.퇴직급여	20			
:	:	:		
11.수도광열비	5			
12.기타	30			
V.영업이익		114	⑨항 (3)영업이익	

〈(교육)서비스업〉

(단위 : 백만원)

과 목	금 액		조사표 항목	비 고
I.매출액		1,234	⑨항 (1) 매출액	
1.상품매출액	234			
2.용역매출액	1,000			
II.매출원가		623	⑨항 (2)영업비용 가.매출원가	
1.상품매출원가	123			
2.용역매출원가	500			
III.매출총이익		494		
IV.판매비와 관리비		380	⑨항 (2)영업비용 나.판매비와 관리비	
1.급여	200			
2.퇴직급여	20			
:	:	:		
11.수도광열비	5			
12.기타	30			
V.영업이익		114	⑨항 (3)영업이익	

〈제조업〉

(단위 : 백만원)

과 목	금 액		조사표 항목	비 고
I. 매출액		1,234	㉠항 (1) 매출액	
1. 제품매출액	1,000			
2. 상품매출액	234			
II. 매출원가		623	㉠항 (2) 영업비용 가. 매출원가	
1. 제품매출원가	523			
2. 상품매출원가	100			
III. 매출총이익		494		
IV. 판매비와 관리비		380	㉠항 (2) 영업비용 나. 판매비와 관리비	
1. 급여	200			
2. 퇴직급여	20			
:	:	:		
11. 소모품비	5			
12. 기타	30			
V. 영업이익		114	㉠항 (3) 영업이익	

【부록 5】 조사표



2009년 기준 스포츠산업 실태조사

○ 본 조사는 통계법 제18조에 의거한 승인통계로 귀 사업체에서 제공해 주신 자료는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따라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는 사용될 수 없으며 비밀이 절대 보장됩니다.

★는 조사원이 기입하는 난입니다.

★조사원ID	★행정구역 분류부호	★산업분류	★ 사업체 고유번호

1 사업체명			
2 대표자명		① 남 ② 여	3 창설연월 년 월
4 소재지	읍·면·(법정)동 빌딩·시장·상가	리	번지 호 통 반 등 층 호
5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체명 : 법인명과 실제 통용명칭이 다를 경우 공식적 명칭을 기재한 후 ()안에 실제 통용명칭 기입
 ※ 창설연월 : 현재의 산업활동(업종)을 시작한 시기

6 조직형태

① 개인사업체 ② 회사법인 ③ 회사이외 법인 ④ 비법인단체 ⑤ 국가·지방자치단체
 ↳ 자본금()백만원 * 공장·지사(점)·영업소 등은 자본금을 기입하지 않습니다.

- ② 회사법인 : 공장, 지사(점), 영업소 등은 「비고」에 해당 형태를 기입
- ③ 회사이외 법인 : 민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사업체, 재단법인, 사단법인, 특수법인(법무, 회계법인, 공사, 공단) 등
- ④ 비법인단체 : 법인격이 없는 단체나 모임, 종교단체, 문화단체, 후원회 등

7 종사자수

(2009.12.31. 기준 종사자 수)

(단위 : 명)

종사자수	종사자수			인력총원 현황		연간 급여액					
	남	여	계	'09년 신규자수	'10년 신규자수 (계획된 인원 포함)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합 계(①+②+③+④+⑤)											
① 상용근로자						/					
② 임시 및 일용근로자											
③ 자영업자											
④ 무급가족종사자											
⑤ 기타 종사자											

2009.12.31. 현재 종사자 수를 기입(연말기준) 단, 연간 인원변동이 많은 사업체는 월평균 종사자 수를 기입

- ① 상용근로자 :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 또는 고용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않고 정규직원으로 일하는 근로자로서 사업체에서 급여를 지급하는 자
- ② 임시 및 일용근로자 : 고용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로서 사업체에서 급여를 지급하는 자
- ③ 자영업자 : 개인 사업체를 소유하며 자신의 책임 하에 직접 경영하는 자(법인사업체 대표자는 자영업자가 아님)
- ④ 무급가족종사자 : 자영업자의 가족이나 친인척으로 임금을 받지 않고 해당 사업체 정규 근무시간의 1/3이상 종사하는 자
- ⑤ 기타 종사자 : 일한 실적에 따라 수수료 또는 봉사료 등을 조사 대상 사업체에서 직접 지급하는 자(기본급 등 일정 급여는 없음, 일정급여를 지급하면 계약기간에 따라 상용근로자, 임시 및 일용근로자로 기입)



11 사업체 경영전망 (전반적인 국가경제 상황과는 상관없이 오직 귀 사업체의 입장에서 전년도와 대비하여 응답)

2009년(2008년 대비 증가율)	2010년(2009년 대비 증가율)
()%	()%

* 2010년 매출액이 2009년 대비 6% 증가할 경우 +6%, 10% 감소할 경우 -10%

12 설문문항

12.1 스포츠산업 대외경쟁력 강화부문 1순위(), 2순위()	
스포츠산업이 대외 경쟁력을 갖기 위하여 가장 필요한 부문은 무엇입니까?	
① 전문인력양성	② 국산제품 품질 제고
③ 자체브랜드 개발 및 브랜드 인지도 제고	④ 홍보 및 마케팅 강화
⑤ 대형화, 전문화	⑥ 관련 정책부처 지원
⑦ 산학연 협력강화	⑧ 기타()
12.2 스포츠산업 육성·발전 장애요인 1순위(), 2순위()	
스포츠산업이 육성·발전하는데 가장 장애가 되는 요인은 무엇입니까?	
① 전문인력부족	② 사업체 규모 영세성
③ 자금부족	④ 기술정보 및 시장정보 부족
⑤ 제도 및 규제 과다	⑥ 외국업체의 시장잠식
⑦ 정부 지원 미흡	⑧ 기타()
12.3 스포츠산업 육성·발전 지원부문 1순위(), 2순위()	
스포츠산업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부문은 무엇입니까?	
① 전문인력양성지원	② 자금지원 확대(융자확대 등)
③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④ 스포츠용품 인증제도(KISS마크) 활성화 및 국제인증획득 지원
⑤ 스포츠산업 통합정보망 구축	⑥ 각종 국제 대회 유치(월드컵, 올림픽 등)
⑦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진출지원	⑧ 기타()
12.4 귀사의 스포츠산업 매출증대방안 1순위(), 2순위()	
귀사가 매출 증대 방안으로 향후 계획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① 전문인력 채용	② 자체 브랜드 및 신규제품 개발
③ 홍보 및 마케팅 강화	④ 내수시장 확대
⑤ 해외시장 진출 확대	⑥ 기타()

비 고	휴·폐업, 매출액 증감 사유 등 특이사항을 기입합니다.	응답자	조사담당자
		부서	
		성명	
		전화 () -	() -

☺ 조사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8 사업의 종류

① 운동 및 경기용품 제조업	② 경기 및 오락스포츠 서비스업
③ 운동 및 경기용품 유통업 및 임대업	④ 스포츠 및 레크레이션 교육서비스업

9 사업 실적

재무제표 작성 여부 ① 작성 ② 미작성 ☞ 해당란에 ✓ 표시

		심조	조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1) 매출액	2009년 1년간 영업활동(제품제조, 상품판매나 용역 제공 등)으로 얻은 매출액(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								
수출액	매출액 중 해외로 수출한 매출액								
(2) 영업비용	손익계산서의 「매출원가」와 「판매비와 관리비」를 합한 비용								
가. 매출원가	매출액 창출에 직접적으로 소요된 매출원가 비용								
• 제조업(제조원가)	제품의 생산을 위해 투입한 손익계산서상 제조원가								
• 도소매업(매출원가)	상품매입비 등 직접적으로 투입된 손익계산서상 매출원가								
• 서비스업(매출원가)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투입된 손익계산서상 매출원가								
나. 판매비와 관리비	매출원가를 제외한 인건비, 임차료, 기타영업비용 등								
(3) 영업이익	* 영업이익 = (1) 매출액 - (2) 영업비용								

9.1 스포츠산업 비중 (전체 매출액을 내수 및 수출별로 스포츠산업·비스포츠산업 비중을 작성)

매출액 비중	내수 매출액 비중		수출 매출액 비중	
	스포츠산업	비 스포츠산업	스포츠산업	비 스포츠산업
100%	%	%	%	%

10 특성항목

스포츠산업 제조업, 유통업 및 임대업

8항 사업의 종류가 **① 운동 및 경기용품 제조업** 또는 **③ 유통업 및 임대업**에 해당되는 사업체만 응답

상품별 구성비

	금액 (백만원)	비중						
		스포츠 음료	스포츠 의류	스포츠 신발	공류	라켓류	기타	합계
1) 스포츠용품별 내수비중		%	%	%	%	%	%	100%
2) 스포츠용품별 수입비중		%	%	%	%	%	%	100%

스포츠산업 서비스업

8항 사업의 종류가 **② 경기 및 오락스포츠 서비스업**에 해당되는 사업체만 응답

연간 영업개월 수 및 이용인원

1) 연간 영업개월 수	개월	· 사업체에서 2009년 중에 정상적으로 영업한 개월 수(파업, 휴업 등 제외) · 한 달 간 정상적인 영업일수의 1/2이상을 영업한 경우에는 1개월로 계산
2) 연간 이용인원(고객) 수	명	· 2009년 1년간 사업체의 사업시설을 이용한 인원(고객)수를 유료입장객 또는 회원 수 기준으로 조사

스포츠산업 교육서비스업

8항 사업의 종류가 **④ 교육서비스업**에 해당되는 사업체만 응답

고객유형별 매출액 구성비

(수강생의 연령대별 매출 구성비를 작성)

매출액 비중	① 7세 이하	② 8세 ~ 13세	③ 14세 ~ 19세	④ 20세 ~ 39세	⑤ 40세 ~ 59세	⑥ 60세 이상
100%	%	%	%	%	%	%